

# 목 차

## 제1장 연혁 및 현황

I. 구 연혁 및 현황 .....	39
1. 서대문구 연혁 .....	39
2. 구정현황 .....	40
II. 행정여건 .....	43
1. 행정기구 및 인력 .....	43
2. 재정여건 .....	44
III. 의회 연혁 및 현황 .....	45
1. 지방의회의 의의 .....	45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45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47
4. 의회 현황 .....	48

## 제2장 의회 운영

I. 본의회 운영 .....	53
1. 의의·집회·회기 .....	53
2. 구성 .....	54
3. 현황 .....	55
II. 위원회 운영 .....	69
1. 의회운영위원회 .....	69

2. 총무위원회 .....	74
3. 시민건설위원회 .....	112
4. 특별위원회 .....	151

###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I. 구정질문 .....	171
1. 의의 .....	171
2. 현황 .....	171
3. 구정 질문 및 답변 .....	172
II. 행정사무 감사 .....	232
1. 의회운영위원회 .....	232
2. 총무위원회 .....	234
3. 시민건설위원회 .....	257
III. 민원처리 .....	268
1. 현황 .....	268
2. 청원처리 .....	268
3. 진정처리 .....	269
IV. 의원 세미나 .....	273
1. 의원 세미나 .....	273
<b>부    록 .....</b>	<b>275</b>

제 1 장

沿革 및 現況

1998.7.1~1999.6.30

區 沿革 및 現況 I

行政與件 II

議會 沿革 및 現況 III

# 제1장 연혁 및 현황

## I. 구 연혁 및 현황

### 1. 서대문구 연혁

서대문은 예로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으며, 또한 북쪽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다. 현재의 서대문구는 조선왕조시대 동서남북중 서부지역의 반석방과 북부의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의 일부지역으로 구성되었던 곳이다.

갑오경장과 한일합방 이후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 때 오늘날과 유사한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1936년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고양군 은평면 내의 홍제내·외리일부, 촌암리·홍지리·신영리와 연희면 내의 동교리·북아현리·대현리·노고산리·창천리·신촌리·봉원리·연희리·서교리·합정리·망원리·남가좌리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해방당시의 서대문구역소 관할의 정, 정목의 명칭은 정동정·서소문정·봉내정 3정목, 4정목·화천정·의봉로·1정목·2정목·중립촌·합정·죽점정 1정목·2정목·3정목·대현정·노고산정·창천정·연희정·신촌정·봉원정·북아현정·미금정·송월정·교남정·냉천정·천연정·옥천정·관동정·교북정·홍읍정·부촌정·현저정·홍제정·신영정·홍지정·부암정으로 35개정이었다.

1946년 10월 일본식 동명변경에 따라 「정」을 「동」으로 고쳤으며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전부를 편입하여 은평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4년에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노고산동과 창천동 일부를 갈라 마포구에 넘기었으며 1965년에는 안산동·홍은동·대광동·녹신동을 각각 한 동씩 늘려 35개 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고양군 신도면에 속해있는 구과발리와 진관내·외리가 편입됨으로써 구역이 42개 동으로 확장되었고, 이때 마포구의 동교동·서교동 일부가 편입되는 대신 성산동·연희동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행정구역이 대폭 개정된 때는 1975년 10월로 서대문구 일부지역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로 편입되었다.

**제1장 연혁 및 현황**

1979년 10월 1일 은평구청 신설로 그 동안의 은평출장소 관내 13개 동이 분리되어 나갔으며 또 홍지동, 구기동, 신영동, 평창동, 부암동 등이 종로구 관할로 넘어갔다.

1980년 홍은4동을 폐지하였고, 홍계1동 일부를 홍계2동으로 편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3동으로 편입하고 북아현3동 일부를 충정로3가로 편입하여 22개 동으로 관할하여 오다가 1998년 10월 7일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하여 현재 21개 동을 관할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구정 현황**

**가. 일반현황**

**1) 위 치**

구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 - 6	동 단	서대문구 미근동 315 - 5	북위 37° 33' 33" 012 동경 126° 58' 08" 022	동서간 6.154km
	서 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54 - 1	북위 37° 34' 23" 761 동경 126° 54' 04" 616	
	남 단	서대문구 창천동 30 - 16	북위 37° 33' 08" 408 동경 126° 56' 09" 822	
	북 단	서대문구 홍은동 산1 - 70	북위 37° 36' 28" 동경 126° 56' 58" 225	

2) 면 적

총 면 적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녹 지 지 역
17.6km <sup>2</sup> (100%)	15.62km <sup>2</sup> (88.8%)	0.25km <sup>2</sup> (1.4%)	1.73km <sup>2</sup> (9.8%)

3) 동별 행정조직 및 인구 현황

동 명	면 적	행 정 조 직		세 대 수	인 구 수
		통	반		
21개 동	17.60	577	4,371	126,461	362,933
충 정 로 동	0.51	22	146	3,598	9,687
천 연 동	0.97	36	274	7,598	20,950
북아현제1동	0.28	21	152	4,367	11,840
북아현제2동	0.18	15	108	3,085	8,533
북아현제3동	0.62	26	189	5,700	16,460
대 신 동	2.02	23	130	3,863	8,966
창 천 동	0.61	22	154	4,937	12,199
연 회 제 1 동	0.90	27	202	5,727	16,251
연 회 제 2 동	0.58	25	180	4,757	14,174
연 회 제 3 동	1.57	17	133	5,438	13,859
홍 제 제 1 동	0.64	26	188	5,603	16,135
홍 제 제 2 동	0.59	22	168	4,565	13,187

**제1장 연혁 및 현황**

홍 제 제 3 동	0.82	37	260	7,224	20,958
홍 제 제 4 동	1.06	17	112	3,337	9,823
홍 은 제 1 동	0.38	22	142	3,899	12,137
홍 은 제 2 동	1.22	39	278	7,498	22,675
홍 은 제 3 동	2.07	38	337	10,282	30,635
남 가 좌 제 1 동	0.49	37	281	7,406	20,993
남 가 좌 제 2 동	0.79	37	332	9,281	27,777
북 가 좌 제 1 동	0.54	28	242	7,025	21,232
북 가 좌 제 2 동	0.85	40	363	11,271	34,462

**4) 주요시설**

- 공공기관 - 84개 기관 (구·동 22, 파출소 22, 소방파출서 4, 우체국 16, 기타 20)
- 교육기관 - 48개교 (대학 8, 고등학교 7, 중학교 13, 초등학교 18, 외국인학교 2)
- 의료시설 - 540개소 (종합병원 2, 병·의원 307, 약국 등 기타 231)
- 문 화 재 - 29개소 (국보 1, 보물 10, 사적 6, 무형문화재 3, 민속자료등 9)
- 복지시설 - 217개소 (도서관 1, 복지관 3, 경로당 65, 보육시설 148)
- 도시기간 시설
  - 도로연장 290km (도로율 17.6%)
  - 도로포장 2.28km<sup>2</sup> (포장률 93%)
  - 상 수 도 933.5km (보급률 100%)
  - 하 수 도 398km (보급률 100%)
  - 지 하 철 8.2km (2·3·5호선)
  - 도시가스보급 90,300가구 (보급률 71.4%)

## II. 행정여건

### 1. 행정기구 및 인력

○ 기 구 - 1사무국1소5국1담당관25과 21동

○ 인 력 - 정원 1,247명, 현원 1,2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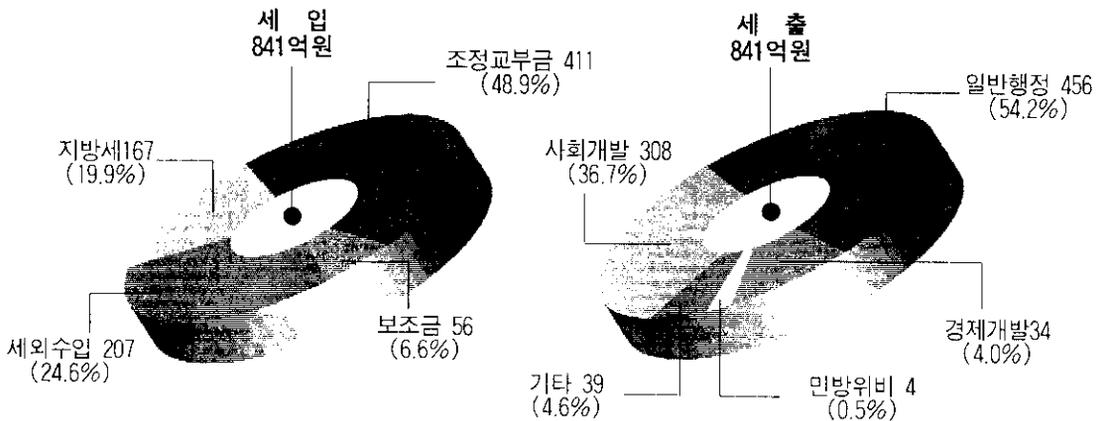
(’99. 8. 31 현재)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비고
구	정 원	743	332	121	12	207	64	계약 7
	현 원	827	370	121	13	236	81	계약 7
동	정 원	407	329	21	4	27	26	
	현 원	374	289	20	2	38	25	
보건소	정 원	74	6	48		15		계약 5
	현 원	69	5	45		12	2	계약 5
구의회	정 원	23	10		8	5		
	현 원	25	11		8	6		

## 2. 재정여건

19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6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1억원(87.3%), 특별회계가 122억원(12.7%)으로 편성되었다.

1)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아래 도표와 같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의료보호기금 28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원, 주차장 88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9회계년도 규모는 122억원이다.

3) 연도별 예산규모 - 최근 5년

연도별	'95	'96	'97	'98	'99
계	852 (14.0%)	966 (13.4%)	1,117 (15.6%)	1,274 (14.0%)	963 (▽24.4%)
일반회계	781	897	1,040	1,163	841
특별회계	71	69	77	111	122

## III. 의회연혁 및 현황

###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가. 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제1장 연혁 및 현황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나. 지방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행정감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한다.
- 청원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서류제출(자료)요구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가 존재하였다. 제약적이거나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려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유향소를 발전시킨 것으로 행정기관의 일부로 설치된 향청은 민선제와 명예직제로 구성되어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갑오경장 이후 1895년 11월 향회규정과 향약별무규정을 공포하여 각 지역단위로 주민이 선출한 공선인(公選人) 등으로 구성된 향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주민이 당해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회의 구성이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한일합방이후 일제시대에 있어서 지방제도는 형식상으로 어느정도 지방자치와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의 지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재의 의회기능을 수행한 것은 도회·부회·읍회이다.

1933년 4월 1일 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는데 도(道)라는 집행기관에 대응하는 의결기관으로 도회(道會)가 구성되었으며, 부제(府制)는 오늘날의 시(市)와 같은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1930년에 의결기관으로 부회(府會)를 설치하였으며, 1931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인 읍회(邑會)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시행되게 되었다.

제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도 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다. 제2대 지방의회(1956-1960)는 1956년 8월에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으며, 1960년 12월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3대 지방의회(1960-1961)가 구성·운영되다가 1961년 5·16혁명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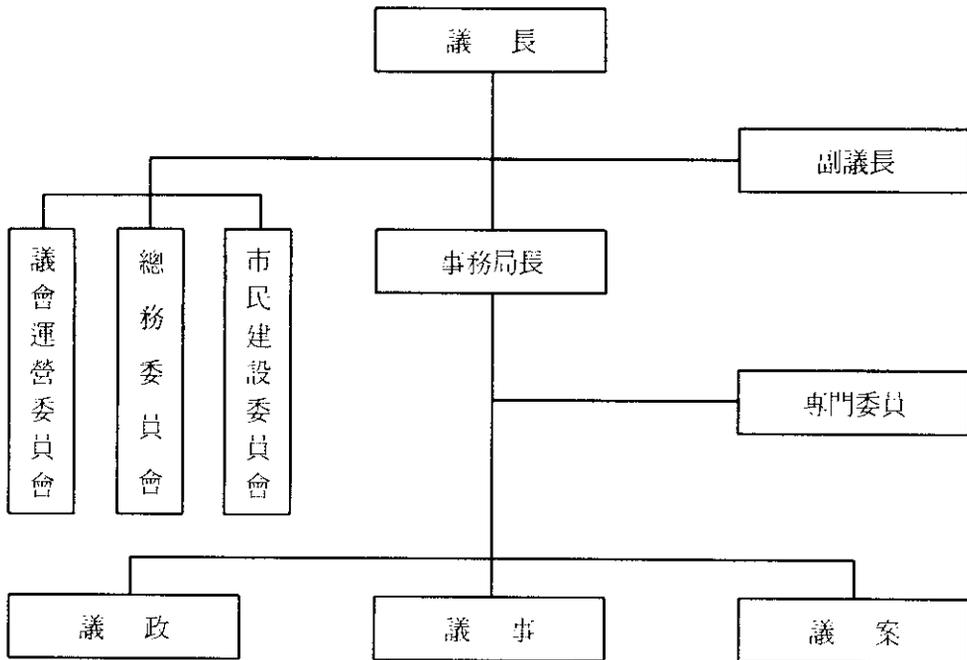
## 제1장 연혁 및 현황

그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가 동년 6월 20일에 시·도 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어 제4대 지방의회(1991-1995)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부터는 제5대 지방의회(1995-1998)가 구성되었고, 제6대 지방의회가 1998년 7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관내 22개 동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으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제2대 의회가 1995. 6.27 동시선거에 의거 1995. 7. 1 구성하였으며, 제3대 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개정되어 의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관내 21개 동에서 당선된 21명의 의원으로 1998. 6. 4 동시선거에 의거 1998. 7. 1 부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 4. 의회 현황

### 가. 조 직



나. 구 성

- 의 원 : 총 21명
- 구 성
  - 의 장 : 임재선 의원 ('98. 7. 1 ~ '99. 6. 23)  
김정현 의원 ('99. 6.24 ~ '99. 11. 현재)
  - 부 의 장 : 김정현 의원 ('98. 7. 1 ~ '99. 6. 23)  
기창표 의원 ('99. 6.24 ~ '99. 11. 현재)
  - 상임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의원 ( 9명)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용완 의원 (10명)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수 의원 (10명)

다. 사무국 직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4급	6급	7급	8급	9급	5급	7급	8급	9급	행 정 사무원	방호원	운전원
정 원	23	1	3	3	2	1	2	2	2	2	2	1	2
현 원	25	1	3	5	2		2	2	2	2	2	2	2
과부족	2			2		▽1						1	

라. 의회청사 현황

-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산5 - 5
- 시설물 : 약 345평 (단 위 : 평)

3층 (201)	의장실	부 의장실	부속실	제 1 회의실	제 2 회의실	사무국	사 무 국장실	전 문 위원실	자료실	방호 원실	복도 기타
	13.8	11	4.6	23	23	32	11	8.6	9	4	61
4층 (143)	본회의장		방 청 석		위원장실(3)		의원휴게실			복도·기타	
	63		10		9		16			45	



제 2 장

議會 運營

1998.7.1~1999.6.30

本會議 運營 I

委員會 運營 II



## 제2장 의회운영

### I. 본회의 운영

#### 1. 의의·집회·회기

##### 가. 의 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집 회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 회기기간에는 본회의와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폐회기간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의장 및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하여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다. 회 기

-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기회는 광역의회는 매년 11월 20일, 기초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기는 정기회의 경우 시·도의회는 40일, 시·군·구의회는 3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도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구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구 성

제2대 의회가 '98. 6.30 만료되었고, 제3대 전반기 의회가 '98. 7. 1 구성되었으며 의장단 및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의 장 단		의 원	비 고
반기별	기 간	의 장	부의장		
제3대 (전반기)	'98. 7. 1~ '99. 6. 23	임재선 의 원	김정현 의 원	유규상 이기봉 김화형 전성장 김대봉 김종철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총 21명
	'99. 6. 24~ 현재	김정현 의 원	기창표 의 원	최용완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허준구 의원	

※ '99. 6. 16 임재선 의장의 사임에 따라 '99. 6. 24 의장단 재구성

### 3. 현 황

#### 가. 안건처리 현황

구 분	회의 일수	계	조 례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기타
			제정	개정	부결						
계	80	122	11	42		2	3	4	5	3	52
임 시 회	제61회	2	5								5
	제62회	8	7		1	1					5
	제63회	6	15		7				1	2	5
	제64회	5	11	2	3		1	2			3
	제66회	8	12	6	3						3
	제67회	8	7						1	1	5
	제68회	4	7		2						5
	제69회	9	25	1	16			1			7
정 기 회	제65회	30	33	2	10	1	2	1	3		14

#### 나. 집회현황

회 기 별	집회공고일	개 회 일	폐 회 일
제61회 임시회	'98. 7. 2	'98. 7. 8	'98. 7. 9
제62회 임시회	'98. 7. 18	'98. 7. 25	'98. 8. 1
제63회 임시회	'98. 9. 15	'98. 9. 21	'98. 9. 26
제64회 임시회	'98. 10. 26	'98. 11. 2	'98. 11. 6
제65회 정기회	'98. 11. 18	'98. 11. 25	'98. 12. 24
제66회 임시회	'99. 2. 13	'99. 2. 20	'99. 2. 27
제67회 임시회	'99. 4. 3	'99. 4. 10	'99. 4. 17
제68회 임시회	'99. 4. 26	'99. 5. 1	'99. 5. 4
제69회 임시회	'99. 6. 10	'99. 6. 16	'99. 6. 24

다. 회기별 집회요구 현황

회 기 별	집회공고일	집회 요구자	집회요구 이유
제61회 임시회	'98. 7. 2	서대문구청장	원구성 등
제62회 임시회	'98. 7. 18	최광진의원의외 8인	'98제1회추경예산안 등
제63회 임시회	'98. 9. 15	최광진의원의외 6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6건
제64회 임시회	'98. 10. 26	김대봉의원의외 7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등 9건
제65회 정기회	'98. 11. 18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	'99예산안.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제66회 임시회	'99. 2. 13	이기봉의원의외 7인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0건
제67회 임시회	'99. 4. 3	최광진의원의외 7인	구정질문 등
제68회 임시회	'99. 4. 26	최용완의원의외 7인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제69회 임시회	'99. 6. 10	최광진의원의외 7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8건

라. 의회운영 현황

○ 본회의

개 회 회 수			개 회 일 수		
계	정기회	임시회	계	정기회	임시회
9회	1회	8회	80일	30일	50일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상 임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차	12차	41차	40차	8차	8차

마.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내용 (제61회 ~ 제69회)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1회 임시회	'98. 7. 8 ~ '98. 7. 9 (2일간)	제1차 7. 8 (수)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 의 장 : 임재선 의원 - 부의장 : 김정현 의원 2. 제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8. 7. 8~ 7. 9 (2일간)	
		제2차 7. 9 (목)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회운영위원회 : 조재구, 정혜연, 허준구, 이문복, 이기봉, 김종철, 최광진, 김대봉, 최대중 의원 - 총무위원회 : 유규상, 정혜연, 한한열, 최용완, 조재구, 기창표, 김대봉, 김정현, 이기봉, 오환인 의원 - 시민건설위원회 : 최대중, 허준구, 김종철, 이진수, 이문복, 최광진, 김화형, 전성장, 김영일, 정일출 의원 2. 상임위원장선거의건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조재구 의원 - 총무위원회위원장 : 최용완 의원 -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 이진수 의원 3. 제6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 서명의원 : 유규상 의원, 기창표 의원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2회 임시회	'98. 7. 25 ~ '98. 8. 1 (8일간)	제1차 7. 25 (토)	1. 제6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8. 7. 25 ~ 8. 1 (8일간)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제안설명 : 금동영 기획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위원선임 : 기창표, 정혜연, 한한열, 이기봉, 김중철, 이문복, 김화형 의원 4. 제6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이기봉 의원, 김화형 의원	
	'98. 7. 25 ~ '98. 8. 1 (8일간)	제2차 8. 1 (토)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 조례안 3.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의견채택
제63회 임시회	'98. 9. 21 ~ '98. 9. 26 (6일간)	제1차 9. 21 (월)	1. 제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8. 9. 21 ~ 9. 26 (6일간)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제안설명 : 정혜연 의원 - 출석기간 : '98. 9. 24 ~ 9. 25 (2일간)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과장 - 출석이유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3회 임사회	'98. 9. 21 ~ '98. 9. 26 (6일간)	제1차 9. 21 (월)	3. 제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사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전성장 의원, 김대봉 의원	
		제2차 9. 23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 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9. 24 (목)	1. 구정에 관한질문 - 질문의원 : 김화형, 전성장, 최태중, 이문복, 기창표 의원 - 답변자 : 이정규 구청장	
		제4차 9. 25 (금)	1. 구정에 관한질문 - 질문의원 : 전성장, 한한열, 최광진, 정혜연, 김대봉, 기창표, 김종철, 이문복 의원 - 답변자 : 금동영 기획실장, 전원배 총무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송주 건설교통국장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3회 임시회	'98. 9. 21 ~ '98. 9. 26 (6일간)	제5차 9. 26 (토)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 에관한건의안 4.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 5. 건축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는구역지정 (안)보고청취건 - 보고자 :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64회 임시회	'98. 11. 2 ~ '98. 11. 6 (5일간)	제1차 11. 2 (월)	1. 제6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8. 11. 2 ~ 11. 6 (5일간) 2. 제6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김종철 의원, 김정현 의원	
		제2차 11. 6 (금)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 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4회 임시회	'98. 11. 2 ~ '98. 11. 6 (5일간)	제2차 11. 6 (금)	8.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9.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65회 정기회	'98. 11. 25 ~ '98. 12. 24 (30일간)	제1차 11. 25 (화)	1. 제6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8.11.25 ~ '98.12.24 (30일간) 2. 19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제안설명 :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 제안설명 : 나송주 재무국장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 제안설명 : 나송주 재무국장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제안설명 : 최광진 의원 - 출석기간 : '98.12.10~12.12(2일간) - 출석대상: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각 과장 - 출석이유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구성 : 한한열, 오환인, 이기봉, 기창표, 유규상, 전성장, 허준구, 정일출, 김영일, 이문복, 최광진 의원 7. 제6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정혜연 의원, 한한열 의원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98. 11. 25 ~ '98. 12. 24 (30일간)	제2차 12. 10 (목)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의원 : 이문복, 김화형, 이기봉, 유규상, 오환인, 기창표, 김대봉 의원 - 답 변 자 : 이정규 구청장	
		제3차 12. 11 (금)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위원 : 전성장, 김화형, 한한열 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제4차 12. 12 (토)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의원 : 이진수, 기창표, 최광진 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제5차 12. 14 (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장 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 보고자 :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 보고자 :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제6차 12. 15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보고의건 - 보고자 :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98. 11. 25 ~ '98. 12. 24 (30일간)	제7차 12. 16 (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관리 운용계획보고 - 보고자 :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제8차 12. 17 (목)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보고의견 - 보고자 :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제9차 12. 21 (월)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결과 보고 : 한한열 예산결산특위 간사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결과 보고 : 한한열 예산결산특위 간사 3. 1999년도예산안 - 심사결과 보고 : 전성장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10차 12. 24 (목)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2.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세목교환지 에대한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 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 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 9.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98. 11. 25 ~ '98. 12. 24 (30일간)	제10차 12. 24 (목)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 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 1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 택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66회 임사회	'99. 2. 20 ~ '99. 2. 27 (8일간)	제1차 2. 20 (토)	1. 제6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견 - 회기결정 : '99. 2. 20 ~ 2. 27 (8일간) 2. 제6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서명의원 : 최태중 의원, 이문복 의원	
		제2차 2. 27 (토)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 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 실설치·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 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 담금징수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 10.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 취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찬성의견채택
제67회 임시회	'99. 4. 10 ~ '99. 4. 17 (8일간)	제1차 4. 10 (토)	1. 제6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9. 4. 10 ~ 4. 17 (8일간)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제안설명 : 최광진 의원 - 출석기간 : '99. 4. 12 ~ 4. 14 (3일간)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 출석이유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3. 제6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김영일 의원, 이진수 의원	
		제2차 4. 12 (월)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의원 : 이진수, 전성장, 이기봉, 김희형, 오환인, 기창표, 김영일, 조재구, 김대봉 의원 - 답 변 자 : 이정규 구청장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7회 임사회	'99. 4. 10 ~ '99. 4. 17 (8일간)	제3차 4. 13 (화)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의원 : 한한열, 최광진 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이미완 보건소장	
		제4차 4. 14 (수)	1. 구정에관한질문 - 질문의원 : 정혜연, 오환인, 기창표 의원 - 답 변 자 :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제5차 4. 17 (토)	1.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수정안가결
제68회 임사회	'99. 5. 1 ~ '99. 5. 4 (4일간)	제1차 5. 1 (토)	1. 제6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9. 5. 1 ~ 5. 4 (4일간)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선 임: 다음회기로 계류 3. 제6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최용완 의원, 최광진 의원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8회 임사회	'99. 5. 1 ~ '99. 5. 4 (4일간)	제2차 5. 4 (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li> <li>3.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 정에관한의견청취안</li> <li>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선임위원 : 정혜연 의원, 정현철씨, 이도직씨</li> </ol>	
제69회 임사회	'99. 6.16 ~ '99. 6.24 (9일간)	제1차 6. 16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 - 회기결정 : '99. 6. 16 ~ 6. 23 (8일간)</li> <li>2. 제6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 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서명의원 : 조재구 의원, 정일출 의원</li> </ol>	
		제2차 6. 23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li> <li>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 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li> <li>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li> <li>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6.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li> <li>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li> <li>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li> </ol>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제2장 의회운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9회 임사회	'99. 6. 16 ~ '99. 6. 24 (9일간)	제2차 6. 23 (수)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 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 터설치및운영조례안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 례안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 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69회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기연장 의건 - 회기연장 : '99. 6. 24 ~ 6. 25 (2일간)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69회 임사회	'99. 6. 16 ~ '99. 6. 24 (9일간)	제3차 6. 24 (목)	1. 서대문구의회의장사임의건 - 임재선의장 사임의결 2. 서대문구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 - 의장 선임 : 김정현 의원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대문구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 - 부의장 선임 : 기창표 의원	

## II. 위원회 운영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전반기)	'98. 7. 1 ~ '99. 6. 30	조재구 의원	최광진 의원	정혜연 허준구 이문복 이기봉 김종철 김대봉 최태중 의원	총 9명

#### 나. 안건처리 현황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1회 임시회 폐회중('98. 7. 9) 최초 개의하여 제69회 임시회까지 의사 일정협의의견 등 2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등 의회운영전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 원	기 타
	개정	제정							
21	2			2	1		2		14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7. 9)	1. 간사선임의건 - 간사선임 : 최광진 의원	
	제2차 (’98. 7. 16)	1.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안건 - 내용 : 의장제안 의석배정안 가결	
제62회 임시회	제1차 (’98. 7. 29)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 고 자 : 박정호 사무국장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박정호 사무국장	원안가결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98. 9. 15)	1. 제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 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8. 9. 21 ~ 9. 26 (6일간) 2. 1997년도의정지발간계획협의의건 - 편집위원회 구성 : 총 14명 (운영위 9명, 총무·시민 각 1명. 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제63회 임시회	제1차 (’98. 9.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98. 10. 23)	1. 제6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8. 11. 2 ~ 11. 6 (5일간)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내용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11. 23)	1. 제6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8. 11. 25 ~ 12. 24 (30일간)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제1차 (’98. 12. 9)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2.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2차 (’98. 12. 23)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내용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3.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교환지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 내용 :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제65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99. 2. 12)	1. 제6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9. 2. 20 ~ 2. 27 (8일간)	
제66회 임시회	제1차 (’99. 2. 24)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 고 자 : 최홍진 사무국장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99. 4. 2)	1. 제6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9. 4. 10 ~ 4. 17 (8일간)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9. 4. 26)	1. 제6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9. 5. 1 ~ 5. 10 (4일간)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9. 6. 10)	1. 제6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99. 6. 16 ~ 6. 23 (8일간)	

## 라. 의안심사 내용

### ■ 조례안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98. 9. 15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개정이유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계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제고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내용중 “그 소속 직원의” 를 삭제
- 안 제3조(하부조직) 제1항 내용중 “의정계·의사계·의안계”를 삭제

##### 2)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23 제65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각종 조례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
  -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
  -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2)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2. 총무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 3대 (전반기)	'98. 7. 1 ~ '99. 6. 30	최용완 의원	김대봉 의원	유규상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기창표 김정현 이기봉 오환인 의원	총 10명

### 나. 안건처리 현황

총무위원회는 제61회 임시회 폐회중('98. 7. 9) 최초 개의회 제69회 임시회까지 의사일 정협의의견 등 3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구행정사무감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 원	기 타
	개정	제정							
36	21	6	5	2			2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8. 7. 9)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선임 : 과반수 미달로 정회	
	제2차 (’98. 7. 22)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선임 : 김대봉 의원	
제62회 임시회	제1차 (’98. 7. 27)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 보 고 자 :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이길영 문화공보담당관, 최성근 총무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성구 재무과장	
	제2차 (’98. 7. 28)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보건소 - 보 고 자 :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3차 (’98. 7. 29)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감사담당관, 시민과 - 보 고 자 : 장원석 감사담당관, 이수연 시민과장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4차 (’98. 7. 30)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세무2과, 지적과 - 보 고 자 : 박호엽 세무2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제5차 (’98. 7. 31)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장 의회운영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3회 임시회	제1차 (’98. 9.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64회 임시회	제1차 (’98. 11. 3)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의결
	제2차 (’98. 11. 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 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98. 11. 5)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내용 : 계획서작성,채택	
제65회 정기회	제1차 (’98. 12. 3)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3.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98. 12. 4)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제3차 (’98. 12. 5)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서영현 민방재난관리과장	
	제4차 (’98. 12. 7)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박호엽 세무1과장. 김명춘 세무2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제5차 (’98. 12. 8)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6차 (’98. 12. 9)	1. 1999년도예산안 - 내용 : 총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7차 (’98. 12. 1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8차 (’98. 12. 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차 (’98. 12. 19)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제10차 (’98. 12.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원안가결
제11차 (’98. 12. 23)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 내용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	원안가결	

제2장 의회운영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6회 임시회	제1차 (’99. 2. 2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서영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차 (’99. 2. 23)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배순태 재무과장, 박호엽 세무1과장, 김명춘 세무2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제3차 (’99. 2. 24)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제안설명 :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4차 (’99. 2. 2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 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차 (’99. 2. 2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 ·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제67회 임시회	제1차 (’99. 4. 15)	1. '99해빙기취약시설현장시찰의견 - 제안설명 : 서영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차 (’99. 4. 16)	1. '99해빙기취약시설현장시찰의견 - 현장시찰 : 남가좌동제7재개발사업지구 대신동위험시설물	
제68회 임시회	제1차 (’99. 5. 3)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9회 임사회	제1차 (’99. 6. 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99. 6. 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99. 6. 1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차 (’99. 6. 21)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제5차 (’99. 6.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 조례안	원안가결

## 라. 의안심사 내용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98. 7.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7. 31 제6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98. 2. 24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구청장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 신설.(안 제3조)
-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안 제4조)

####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와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조직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며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총무국으로 배속하여 그 명칭을 각각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로 함.
-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사회진흥계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생활체육계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함.
-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함.
-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수질보전계업무중 정화조관련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함.
- 건설관리과를 폐지하여 보상계·가로정비계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이관하고, 관리계업무는 하수과로 이관함.
- 총무국, 시민복지국, 시민과, 도시계획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 도시정비과로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기 위하여 1국 4과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 정원의 총수를 '1,451명에서 204명을 감축한 1,247명'으로 하여
- 집행기관은 '1,224명, 의회사무국은 23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감축조정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표 지방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중 '방법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2세로'하며 사환 직명은 2000년 12월 31까지 있는 것으로 함.(안 제6조와 관련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자치구 과소동의 통·폐합추진에 따라 우리구 동중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하며,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6급계장제가 폐지되고, 동청사중 충정로동 청사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중 현저동란을 삭제하고, 천연동의 전지역 관할관중 ‘냉천동·천연동·옥천동·영천동을 냉천동·천연동·옥천동·영천동·현저동’으로 한다.(안 제4조와 관련임)
- 별표1 동사무소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충정로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중 ‘충정로2가 43, 44-1를 충정로3가 185-2’로 한다.(안 제4조 관련임)
- 제5조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동사무소의 사무분장)동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0.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3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키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 및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안 제2조)
-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안 제3조)
-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안 제4조)
- 보건소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5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 제 안

'98. 10.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3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서대문구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에 대하여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9조, 안 제11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0.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4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98. 7. 16 대통령령 제15836)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함)개정 준칙안이 사달되었기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용어수정
  -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안 제18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안 제18조의3)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안 제22조 제8항, 제9항)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22조의3)
  - 매각대금의 감면(안 제38조의1)
- IMF경제난에 따른 매각대금 분납조항 신설 및 천제지변 또는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부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규정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안 제21조 제1항 제4호)
  - 대부료 등의 납기(안 제25조 제4항)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안 제27조 제2항, 제3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1) 제 안

'98. 10. 2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11. 4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변경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 연희동 290-3 사유대지 440㎡를 구립어린이집 부지로 매입코자하며, 서대문구 연희동 169-32 경찰청 소유 대지 357㎡와 서대문구 미근동 83-5 구소유 대지 165.3㎡을 교환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제 안

'98. 10. 2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11. 4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 연희동 165-2호외 7필지 사유지 대지 815㎡, 건물 4,028.66㎡를 보건소 청사 건물로 매입코자하는 것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 제 안

'98. 10.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4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심의 (안 제2조)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제4조)
  -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원 : 구청장이 위촉
    -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 고문 : 구청장이 위촉 가능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의견청취(안 제9조)
  -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가능
- 수당(안 제10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8. 10.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5 제65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 우리구에서는 경영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4일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96년부터 재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 현재 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대부분 주차장관리,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한정되어 지속적인 기금조성의 실익이 없고 별도의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산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당면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 재정운영방향과 부합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8 제6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 강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하고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8 제6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가기간·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통보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별정직 동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항 삭제.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인정.(안 제10조의2)
-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안 제10조의3)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8 제6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98. 9. 19)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인사 12100-2367 ('98. 10. 1)자로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함.(안 제9조의2)
-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함.(안 제9조의3)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12. 19 제65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의료계획, 1999~2002'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배경과 과정 및 일반적 보건의료 현황
-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향후 보건소 중점과제 추진계획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22 제65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 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의 기능을 갖는다.(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안 제3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안 제7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22 제65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서대문구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에 대하여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9조, 안 제11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12. 23 제65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 연희동 78-47외 2필지 대지 755.8㎡를 구소유 홍은1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와 교환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홍제동 82-9외 2필지 시소유 대지 476㎡를 매입코자 하는 것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등을 협의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함.(안 제2조)
-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3조)
-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함.(안 제10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전담 공무원은 둘 수 없음.(안 제13조, 14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주민독서진흥사업으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93. 8. 16(조례213호)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이용주민 저조 등 설립 취지와 기대성과가 미흡하여 '97년도 이후 운영예산이 삭감되는 등 기능을 완전상실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폐지됨으로 '동단위 새마을문고'를 신규개설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문화된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6 제6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안 제5조)
  - 건강과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활동 교육
- 구청장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운영을 체육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1조)

다) 수정골자

- 안 제12조 '구청장이 교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교실운영을 위탁한 후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6 제66회 임시회 제 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 1998. 12. 31자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서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6(경자동차의 범위)이 삭제되어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에 관계없이 제5종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중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인'으로 함.(안 제13조의 제2호)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3을 적용함.(안 제13조의2)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100%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1조의2)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4.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5. 3 제68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인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13조 제1항)
- 보조금의 교부중지·반환사유중 '신고의무태만'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제6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9. 4.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5. 3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 우리구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90. 8. 8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직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23조 제4항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 서대문구체육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7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 기준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 및 명확히 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제한한 것을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으로 하고,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 제1항)
-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 삭제 및 명확한 기준 추가 (안 제3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지급정지 사유중 삭제 및 완화 -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 삭제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 삭제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함
  - 제9조 제1항 지급정지 기준 추가 -
    1. 사망, 전출, 사직으로 통장직을 상실한 때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7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동조례 설치근거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가 '97.12. 9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함.(안 제2조 제2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8 제69회 임시회 제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상 주민에게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학자금융자시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성적기준을 삭제.(안 제3조 제3항)
- 용자받은 가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씩 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완화.
- 용자금의 상환기한전 반환사유중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은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8 제6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운영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에게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도자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학생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거 각동 회장의 추천에 의거 새마을지회 심사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므로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로 장학생 선정은 절차상 규제내용으로 이를 '매학기 초'로 완화.(안 제5조 제1항)
- 장학생 선발인원을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한다는 제한규제 내용인 선발인원을 예산의 범위내'로 완화.(제6조)
- 장학생 선정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시기도 장학생 선발후 즉시 지급 가능하도록 매학기초로 완화.(안 제8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9 제6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규제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조례 제3조(부과대상)의 '별표1(과태료금액)'이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 내용과 불합치하여 동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당해조항을 삭제함.
- 동조례 제6조(사전징수)가 호적과태료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규정하였으나 호적법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동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와 배치된 조항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3. 시민건설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전반기)	'98. 7. 1 ~ '99. 6. 30	이진수 의원	최태중 의원	허준구 김종철 이문복 최광진 김화형 전성장 김영일 정일출 의원	총 10명

#### 나. 안건처리 현황

시민건설위원회는 제61회 임시회 폐회중('98. 7. 9) 최초 개의하여 제69회 임시회까지 의사 일정협의의견 등 3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구행정사무감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 원	기 타
	개정	제정							
33	19	7		2		3	2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8. 7. 9)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선임 : 최태중 의원	
제62회 임시회	제 1 차 (’98. 7. 27)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시민복지국 - 보 고 자 :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제 2 차 (’98. 7. 28)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 보 고 자 : 노병주 주택과장 정시운 도시계획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주택개량과장	
	제 3 차 (’98. 7. 29)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 보 고 자 :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서영현 교통행정과장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서영현 교통행정과장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제2장 의회운영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2회 임사회	제 4 차 (’98. 7. 30)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시민복지국 - 보 고 자 : 김종천 위생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제 5 차 (’98. 7. 31)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 보 고 자 :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2.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건의청취안	찬성의견채택
제63회 임사회	제 1 차 (’98. 9.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 관한건의안	원안가결
		4.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 준공에관한건의안	원안가결
제64회 임사회	제 1 차 (’98. 11. 3)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 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98. 11. 4)	1.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건의청취안	찬성의견채택
	제3차 (’98. 11. 5)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작성채택
제65회 정기회	제1차 (’98. 12. 3)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5회 정기회	제 2 차 ( '98. 12. 4 )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이수연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제 3 차 ( '98. 12. 5 )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정일택 주택과장 홍성목 주택개발과장	
	제 4 차 ( '98. 12. 7 )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정시운 도시정비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제 5 차 ( '98. 12. 8 )	1. 1999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제 6 차 ( '98. 12. 9 )	1. 1999년도예산안	수정안가결
	제 7 차 ( '98. 12. 15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 8 차 ( '98. 12. 18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 9 차 ( '98. 12. 19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 10 차 ( '98. 12. 22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 11 차 ( '98. 12. 23 )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작성채택

제2장 의회운영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6회 임시회	제 1 차 ( '99. 2. 22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 보 고 자 : 이수연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제 2 차 ( '99. 2. 23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 보 고 자 : 정일택 주택과장 홍성목 주택개발과장 정시운 도시정비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제 3 차 ( '99. 2. 24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 보 고 자 : 서창기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제 4 차 ( '99. 2. 25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5 차 ( '99. 2. 26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 2.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 청 취안 3.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 관한의견청취안	수정안가결 계 류  찬성의견채택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7회 임사회	제 1 차 ( '99. 4. 15)	1.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의견청취안	계 류
	제 2 차 ( '99. 4. 16)	1.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수정안가결
제68회 임사회	제 1 차 ( '99. 5. 3)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 치및운영조례안 3.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보고의견	찬성의견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제69회 임사회	제 1 차 ( '99. 6. 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2 차 ( '99. 6. 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 '99. 6. 1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 4 차 ( '99. 6. 21)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 치및운영조례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5 차 ( '99. 6.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 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 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 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라. 의안심사 내용

### ◆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98. 7.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8. 7. 31 제62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노후화 되어 있어 소방도로의 미비 및 건물 지붕틀의 재료가 목조구조임으로 인하여 방화상 취약지역이고 도로와 생활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통행의 불편 및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구역명(가칭) : 남가좌8구역재개발
- 위      차 :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
- 면      적 : 27,615㎡
- 정비대상건축물 : 227동
- 건축계획 : 9동 796세대
- 건   폐   율 : 21.57%이하
- 용   적   율 : 279.23%이하

####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안 제3조 제2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9.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주차시책에 부합하여 유류소비의 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자동차 자율부제)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
- 민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균형을 일치시키고 자가용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2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인상함.
- 민영노외주차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 조정함.
- 주차요금 감면 확대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8. 9. 9 김영일 의원의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건의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 문

개발제한구역인 홍제3동 9-81 ~ 84호, 산 1-169호 임야와 산 1-167 ~ 8호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약 300세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40년 이상 된 약 190동의 노후불량 무허가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도로가 협소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심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 분노 및 쓰레기 수거처리와 보건위생에 취약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향유는 물론 지역행정 구현에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의 40년간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구역의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영일 의원의 14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8. 9. 15 김대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건의안은 '98. 9. 22 제63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 문

서대문구 대현동 61번지 일대 대현제1재개발구역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토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1991. 8. 24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달리 분양권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현금청산 조합원 등에게 1993. 6. 18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였기에, 이들은 아파트 분양금을 자의로 조합에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5여년 동안 입주하고 있어 이들의 퇴거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보호와 장기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준공승인을 위함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유보 2명, 기권 1명으로 김대봉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0.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3 제64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중 일부조항을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8조(청문)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함.
- 제8조 제1항중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 제8조 제2항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

1) 제 안

'98. 10.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1. 3 제64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97. 9. 5)에 따라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관리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시설을 시공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과태료부과절차 등을 하수도법 제42조(과태료)에 의거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3조 제1,2항)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된 때 그 행위를 한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자와 부과절차 등을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가결 하였음.

◆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 안

'98. 10. 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8. 11. 4 제64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40호(대지 6,628.4㎡)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건설부 고시 제512호('85. 11. 22)에 의거 '구역면적의 1/2이상 공원확보 조건' 아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측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당초 계획상의 지상공원용지 면적을 축소하되 부족한 공원면적은 건물공간 내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역명(가칭) : 대현2지구재개발구역
- 위 치 : 대현동 56 - 40
- 면 적 : 6,628.4㎡
- 정비대상건축물 : 85동(주거 45동, 상가 39동, 기타 1동)
- 건축계획 : 1동(20층 274세대)
- 건 폐 율 : 58.77%이하
- 용 적 율 : 803.41%이하
- 변경내용 : 공원용지 면적 '지상 3,314.2㎡'를 '지상 2,068.09㎡와 건물공간 내 1,400㎡'로 변경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5 제65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운용·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70%를 상회하여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8 제65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98. 1. 1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 조례중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안 제35조)
-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와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로 조문정비.(안 제29조 제2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8 제65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98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재활용품매각대금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기금용도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2호(기금의 용도)의 조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등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22 제65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97. 9. 9)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98. 4. 30)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의 축소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96. 12. 30일자 건설업법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

나)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안 제5조)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안 제5조)
- 온돌시공자에 대한 관련 근거 삭제(안 제22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8.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 19 제65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동조례의 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12.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과징금처분)의 조문중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조항이 법적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의 법적근거 마련 및 행정규제사무중 일부 삭제와 완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중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회수 '2회'를 '1회'로 완화.(안 제13조)
- 대행업체 및 규격봉투판매소 계약조건 신설.(안 제19조의2)
-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일부 삭제.(안 제21조 제1항 제4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98년말 서울시로부터 무상인수한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의 기준, 기간 등을 도입.(안 제3조, 제4조)
- 자원화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규정.(안 제5조)
-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1999. 5. 1부터 서울특별시도와 구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분리·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원인자부담금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안 제3조 제1항)
-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안 제3조 제2항)
-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중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5 제66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95. 12. 6)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조례 '97. 1. 15 제3367호) 및 서울특별시도 노선공고에 대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한다.(안 제2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 ◆

1) 제 안

'99. 2.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2. 26 제66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
-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위탁기간 중이라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 안

'99.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9. 2. 26 제66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북가좌동 68번지 일대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노후화되고 소방 도로의 미비로 화재취약지역이며, 각종 도로와 생활기반시설의 미비로 주민통행의 불편과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 역 명 (가칭): 북가좌3구역재개발구역
- 위            치 : 북가좌동 68번지 일대
- 면           적 : 14,305.66㎡
- 정비대상건축물 : 75동
- 건 축 계 획 : 7동 365세대
- 건 폐    율 : 30%이하
- 용    적    율 : 250%이하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

◆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9. 4. 10 이진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건의안은 '99. 4. 16 제67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 문

서대문구 홍제동 105번지 일대 홍제4재개발구역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강구

나) 제안이유

○ 서대문구 홍제4재개발구역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9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98년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35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으나 가각정리의 부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진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수 정안 가결하였음.

◆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 안

'99. 2.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9. 5. 3 제68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내의 부족한 의료시설확충과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일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다른 위치의 주거지역에 해제면적 만큼의 풍치지구를 변경·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명 칭 : 안산지구
- 구 분 : 변경
- 위 치 : 서대문구 신촌동 98-1, 산9-1일대
- 면 적 : 기정 1,605,508㎡, 변경 1,605,508㎡
- 변경면적 : 3,280㎡
- 변경위치
  - 신촌동 98-1 일대 풍치지구 해제
  - 신촌동 산9-1일대 주거지역에 풍치지구 변경결정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 안

'99. 4.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5. 3 제68회 임시회 제 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여성의 직업훈련,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 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유휴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대문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함 (안 제3조)
-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교양과목 등을 내용으로하여 구청장이 이를 고시함 (안 제4조 제1항)
- 교육기간은 연3기, 4개월로 운영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안 제4조 제2항)
- 여성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1인/월 10,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함 (안 제6조)
- 수강료 반환은 개강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은 수강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함 (안 제8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7 제69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마련 (안 제9조 제1항)
-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신고 시기를 “배출 3일 전”에서 “배출전”으로 완화 (안 제10조 제1항 제1,2호)
- 사업장폐기물처리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 (안 제11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7 제69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승인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설치기준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4호의 조문을 삭제 (안 제5조)
- 공중화장실관리인 지정 사항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 (안 제8조)
- 유지·관리기준은 청결상태만 유지토록 일부 조문을 삭제 (안 제10조 제1호, 제3호)
- 공중화장실 개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부 조문을 삭제 (안 제12조 제1항)
- 공중화장실 시설점검은 현실적인 규제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13조)
- 유료화장실 승인 관련조문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법령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삭제 (안 제16조, 제17조)
- 제18조중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조문과 제4항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7 제69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화조청소 야간지역을 고시함은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소자율권에 위배됨으로 동조항 삭제 (안 제5조 제2항)
-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전무하며, 소량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인력과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동조항 삭제 (안 제7조 제8조)
-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동조항 삭제(안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다) 수정안 내용

- 수정이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외라도 심한교통제증 유발과 도심환경의 현저한 저해가 인정되는 지역도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함이 필요함에 따라 동조례 제5조 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에 보탬이 되고자함.
- 수정골자  
본 개정안의 “제5조 2항을 삭제한다”를 “제5조 2항을 현행대로 존치한다”로 한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8 제69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99행정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항 및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조항을 삭제 (안 제3조 제2호)
-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1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삭제 (안 제4조 제1항 제1,2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8 제69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민간부분 행정규제완화정책으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정책에 부합되도록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제 및 폐지신고제를 폐지하여 주차장이용을 활성화하며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신고제”를 “통보제”로 변경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제 폐지
- 너비 6m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 가능 (안 제5조의 2)
-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을 추가요금으로 변경하고 추가요금의 범위는 “4배”에서 “3배 또는 10만원이내”로 완화 (안 제2조)
-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차편의를 제공(안 제8조)
- 부제운행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감면할 수 있음.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19 제69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3. 10.11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그간 위탁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21 제69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구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등 부적절한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구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의료보호법을 직접 적용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대 불금의 상환”조항을 삭제 (안 제8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21 제69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여성의 직업훈련,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킴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희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대문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대상은 18세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함 (안 제3조)
-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교양과목 등을 내용으로하여 구청장이 이를 고시함 (안 제4조 제1항)
- 교육기간은 연3기, 4개월로 운영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안 제4조 제2항)
- 여성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1인/월 10,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함 (안 제6조)
- 수강료 반환은 개강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은 수강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함 (안 제8조)

다) 수정내용

- 수정이유  
복지센터의 수강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희망하는 남성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가선용과 취업의 기회를 확산, 제공하기 위함임.
- 수정골자  
제명"서대문"을 "서대문구"로 제1조 내용중 "여성의"를 "서대문구민의"로 "서대문여성"을 "서대문구여성"으로 등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22 제69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의 감량의무신고기한과 관리대장기록·보존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한 “7일이내”를 “1개월이내”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 과태료부과기준<별표 3>중 2호 나목의 부과금액 “10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안 제14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22 제69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우리구 난지퇴비화 시설이 '99. 3. 2부터 가동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 필요한 기본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3년 이내로” 개정 (안 제4조 제1항)
- 처리시설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및기본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안 제7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6.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6. 22 제69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우리구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 2. 22일 부로 개정되어 자원재활용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중복규제 되는 “보고 및 검사등” 조항을 삭제 (안 제6조)
- 자원재활용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 2)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전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전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검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제3대 전반기 1년간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활동기간	내 용	위원회 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98. 7. 29 ~ '98. 7. 31 (3일간)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	위원장 : 김종철 의원 간 사 : 한한열 의원 위 원 : 기창표, 정혜연, 이기봉, 이문복, 김화형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	'98. 12. 14 ~ '98. 12. 17 (4일간)	·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의결 ·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의결 · 1999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	위원장 : 전성장 의원 간 사 : 한한열 의원 위 원 : 유규상, 기창표, 이기봉, 이문복, 김영일, 최광진, 오환인, 정일출, 허준구 의원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98. 7.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98. 7. 30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규모 등 심의·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실직자구제와 국가경제위기 타개에 공무원 스스로가 동참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실업대책비로 결정하였으며,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등 법정·의무적경비에 중점을 두어 '9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안) (A=B+E)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고
		계 (B=C+D)	당초예산액 (C)	간주처리 (D)	금회추경 (E)	%	
총 계	134,370,345	128,661,012	127,432,889	1,228,123	5,709,333	4.5	
일반회계	121,203,945	117,528,351	116,300,228	1,228,123	3,675,594	3.2	
특별회계	13,166,400	11,132,661	11,132,661		2,033,739	18.3	
의료보호기금	1,844,041	1,406,053	1,406,053		437,988	31.2	
새마을소득지원	1,015,459	670,528	670,528		344,931	51.4	
주 차 장	10,306,900	9,056,080	9,056,080		1,250,820	13.8	

3) 위원회별, 예산과목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안	증(△)감 <금회추경>
	장별	항별			
총	계		121,203,945	117,528,351	3,675,594
운영위원회	소 계		1,424,819	1,424,819	△31,401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1,424,819	1,424,819	△31,401
총무위원회	소 계		61,862,817	59,562,517	2,300,300
	일반행정	기획관리	25,486,784	24,478,562	1,008,222
		공보관리	1,508,930	1,498,222	10,708
		행정감사	110,405	110,405	
		내무행정	25,546,486	26,166,111	△619,625
		선거관리	745,278	745,278	
		재무행정	1,313,268	1,367,622	△54,354
	사회개발	보건	3,939,814	3,413,547	526,267
		도시개발	258,255	258,255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348,663	346,663	2,000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2,604,934	1,177,852	1,427,082
시민건설위원회	소 계		57,916,309	56,509,614	1,406,695
	사회개발	환경관리	21,880,542	21,269,582	610,960
		공원녹지관리	2,573,119	2,496,080	77,039
		일반사회복지	5,760,898	5,286,666	474,232
		생활보호	2,331,466	2,065,645	265,821
		가정복지	4,388,820	4,367,100	21,720
		주택사업	882,222	866,052	16,170
도시개발	902,317	902,317			

제2장 의회운영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안	증(△)감 〈금회추경〉
	장별	항별			
시민건설 위원회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105,022	105,022	
		광공업관리	352,670	352,670	
		치수및재해대책	151,264	151,264	
		건설관리	17,865,222	17,865,222	
		교통행정관리	722,747	781,994	△59,24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안	증(△)감 〈금회추경〉
	장별	항별			
총 계			13,166,400	11,132,661	2,033,739
총무위원회	소 계		1,015,459	670,528	344,931
	사회개발	생활보조	1,015,459	670,528	344,931
시민건설 위원회	소 계		12,150,941	10,462,133	1,688,808
	사회개발	생활보호	1,844,041	1,406,053	437,988
	경제개발	교통행정관 리	10,306,900	9,056,080	1,250,820

3)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중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 11. 20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은 '98. 12. 14 ~ 12. 17 (4일간) 제65회 정회 제2~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등 심의·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 1999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1999년도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명	'99 예산액	'98 예산액	증(△)감		비 고	
			예산액	비율(%)		
총 계	96,387	127,433	△31,046	△24.4		
일반회계	84,111	116,300	△32,189	△27.7		
특별회계	소 계	12,276	11,133	1,143	10.3	
	의료보호기금	2,801	1,406	1,395	99.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37	671	△34	△5.1	
	주차장	8,838	9,056	△218	△2.4	

제2장 의회운영

○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99 예산액	'98 예산액	증(△)감		비 고
			예산액	비율(%)	
합 계	84,111,123	116,300,228	△32,189,105	△27.7%	
110 지방세	16,743,919	18,088,260	△1,344,341	△7.4%	
210 경상적세외수입	7,684,186	10,894,286	△3,210,100	△29.5%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33,816	17,965,372	△4,931,556	△27.5%	
510 조정교부금	41,108,195	57,490,245	△16,382,050	△28.5%	
610 국고보조금등	1,975,791	1,545,428	430,363	27.8%	
620 시·도비보조금	3,565,216	10,316,637	△6,571,421	△65.4%	

○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99 예산액	'98 예산액	증(△)감		비 고
			예산액	비율(%)	
합 계	12,276,355	11,132,661	1,143,694	10.3%	
의료보호기금	2,801,032	1,406,053	1,394,979	99.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637,490	670,528	△33,038	△4.9%	
주차장	8,837,833	9,056,080	△218,247	△2.4%	

○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99 예산액	'98 예산안	증(△)감
총 계			96,387,478	127,432,889	△31,045,411
일반회계	소 계		84,111,123	116,300,228	△32,189,105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1,125,066	1,456,220	△331,154
	일반행정비	기 획 관 리	23,876,720	24,478,562	△601,842
		공 보 관 리	1,491,457	1,775,102	△283,645
		행 정 감 사	84,284	110,405	△26,121
		내 무 행 정	17,934,162	25,278,975	△7,344,813
		재 무 행 정	908,781	1,367,622	△458,841
		보 건 및 생 활 환 경 개 선	보 건	2,860,403	3,777,030
		생 활 환 경	17,193,075	21,174,538	△3,981,463
		공원녹지관리	1,089,655	2,535,736	△1,446,081
	사 회 보 장	일반사회복지	9,196,308	11,175,488	△1,979,180
	주택및지역 사 회 개 발	주 택 사 업	237,222	866,052	△628,830
		도 시 개 발	521,694	1,744,213	△1,222,519
	지역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552,437	453,692	98,745
	국 토 자 원 보 존 개 발	치수및재해대책	153,480	151,264	2,216
		도 로 관 리	2,014,714	16,903,542	△14,888,828
	교 통 관 리	교통행정관리	532,029	781,994	△249,965
	민방위관리	민방위 관리	404,995	346,663	58,332
	예 비 비	예 비 비	3,934,641	1,177,852	2,756,789
	특별회계	소 계		12,276,355	11,132,661
의료보호기금		사 업 비	2,801,032	1,406,053	1,394,97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 업 비	637,490	670,528	△33,038
주 차 장		사 업 비	8,837,833	9,056,080	△218,247

###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요지

#### 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자 : 최광진 의원 )

- 심사일자 : '98. 12. 9 제65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125,066천원에 대하여 의사운영, 기본업무추진급식비등 7개 사업 73,940천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하였으며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나) 총무위원회( 보고자 : 김대봉 의원 )

- 심사일자 : '98. 12. 3 제6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98. 12. 9 제6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52,146,249천원 특별회계 637,490천원 합계 52,146,249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동행정운영시설비및부대비등 7개 사업 258,250천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등 107개 사업 1,527,236천원을 삭감하도록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다) 시민건설위원회( 보고자 : 최태중 의원 )

- 심사일자 : '98. 12. 3 제65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상정  
'98. 12. 9 제65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29,174,725천원 특별회계 12,248,641천원 합계 141,423,366천원에 대하여 위생관리 식품관리 교통질서계도 확대업무추진비 1개 사업 7,000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일반회계 건축지도업무추진 등 3개 사업 151,600천원을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4) 수정안 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7일 한한열 의원외 7인

나)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 제출된 19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 소수계층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 또는 효과면에서 주민의 편익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팽창과 소모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을 삭감조정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소규모 도로시설비보수분야 등 주민복지시설에 투자하도록 조정·편성하여 서대문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함.

다) 수정예산안 주요골자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음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음

○ 세출예산

- 1999년도 예산액 총 96,387,478천원  
(일반회계 84,111,123천원, 특별회계 12,276,355천원)
  - 삭감 : 56개 항목 720,650천원
  - 증액 : 22개 항목 720,650천원
- 일반회계 : 84,111,123천원중
  - 삭감 : 56개 항목 720,650천원
  - 증액 : 22개 항목 720,650천원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음

라)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 별첨

○ 일반회계(삭감 56건 720,65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페이지
세항	목(세목)		'99 예산안	조정안	증(Δ)감	
총 계		56건	3,793,121	3,072,471	Δ720,650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의 정 지 발 간	10,000	8,000	Δ2,000	53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상 황 판	3,000	1,500	Δ1,500	64
		플 래 카 드	400	200	Δ200	65
	업무추진비	기 획 업 무 조 정	13,000	10,000	Δ3,000	66
	일반보상금	우 수 제 안 주 민 포 상	4,400	3,000	Δ1,400	66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민 원 창 구 직 원 복 근 무	13,940	0	Δ13,940	86
	일반보상금	민 간 실 비 보 상 금	50,000	30,000	Δ20,000	89
	민 간 이 전	사 회 단 체 임 의 보 조	80,000	40,000	Δ40,000	89
	연구개발비	구 정 연 구 개 발 비	50,000	30,000	Δ20,000	92
	시 설 비 및 부 대 비	시 설 비	500,000	448,500	Δ51,500	92
전 산 정보운영	일반운영비	일 반 수 용 비	30,436	25,436	Δ5,000	96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중 양 지	138,000	110,000	Δ28,000	104
		서 대 문 구 소 식 지 인 쇄 지 비	89,676	84,676	Δ5,000	104
		현 수 막	960	600	Δ360	107
		자 연 사 전 시 관 건 립 자 문 료	5,000	2,500	Δ2,500	110
	업무추진비	시 낭 송 회	800	0	Δ800	112
		종 무 행 정 추 진 비 (기도회 등)	900	450	Δ450	113
		문 화 예 술 행 사	2,000	1,000	Δ1,000	113
		문 화 예 술 인 초 대 전	500	250	Δ250	113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페이지
세항	목(세목)		'99 예산안	조정안	증(Δ)감	
문화공보	자산취득비	홍보용비디오 카메라구입	4,500	3,000	Δ1,500	117
생활체육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1,992	18,992	Δ3,000	117
	업무추진비	생활체육대회	12,000	10,000	Δ2,000	120
		구민걷기대회	4,500	3,000	Δ1,500	120
	재료비	테니스장리 유지관리	2,000	1,400	Δ600	120
	일반보상금	생활체육 유공자표창	2,240	1,240	Δ1,000	120
	시설비및 부대비	구립테니스장 바닥정비	15,000	0	Δ15,000	123
문화체육 회관운영	일반운영비	현수막	960	400	Δ560	125
		대강당안전 점검및보수	12,000	7,000	Δ5,000	134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17,640	14,640	Δ3,000	138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	39,541	35,541	Δ4,000	155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 무추진	49,400	44,400	Δ5,000	159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1,000	500	Δ500	162
		플래카드	640	240	Δ400	162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5,250	4,250	Δ1,000	179
	일반보상금	회의참석수당	131,280	65,640	Δ65,640	189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현수막	400	200	Δ200	194
	포상금	세입증대우 공무원포상	12,000	10,000	Δ2,000	199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	현수막	320	200	Δ120	215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120	100	Δ20	244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백서발간	9,000	0	Δ9,000	263

제2장 의회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페이지
세항	목(세목)		'99 예산안	조정안	증(Δ)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플 래 카 드	400	200	△200	264
청소관리	인 건 비	야 간근무수당	662,827	435,216	△227,611	273
	일반운영비	플 래 카 드	160	100	△60	281
	시 설 비 및 부 대 비	가로휴지통교체	8,640	5,640	△3,000	292
공원관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백련근린공원내 체력 단련장 설치	145,000	45,000	△100,000	307
녹지관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녹 지 대 정 비	100,000	80,000	△20,000	315
	자산취득비	자 물 품 취 득 비	1,800	1,600	△200	315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현 수 막	160	100	△60	372
	자산취득비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3,400	3,060	△340	377
지역경제관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특 화 거 리 안 내 간 판 제 작	10,000	5,000	△5,000	387
		대 현 동 패 션 특 화 거 리 간 판 제 작	10,000	5,000	△5,000	387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지 시 봉 구 입	850	0	△850	419
	자산취득비	자 물 품 취 득 비	14,849	13,000	△1,849	424
민방위관	일반운영비	주 민 신 고 흥 보 용 플 래 카 드	120	100	△20	428
		을 지 연 습 드 플 래 카 드	120	100	△20	428
예비비	예비비	예 비 비	1,500,000	1,461,500	△38,500	443

○ 일반회계(증액 22건 720,65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 내역			페이지
세항	목(세목)		'99 예산안	조정안	증(Δ)감	
총 계		22건	752,148	1,472,798	720,650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원기념 행사	2,000	3,000	1,000	59
		송년의밤 행사	2,000	3,000	1,000	59
		의원체육 대회	8,000	12,000	4,000	59
의정활동	의회비 (의정운영 공동업무 추진비)	의정운영공동업무 추진비 (4,000,000원×21명)	58,800	84,000	25,200	6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39,060	55,800	16,740	62
문화체육 회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운영	0	5,000	5,000	134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운영	0	30,000	30,000	153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 (5,000원×10일×12 월×426명)	102,240	255,600	153,360	184
		소규모도로시설물 보수 (6,250,000원×21동)	84,000	131,250	47,250	192
		소규모하수도 시설물보수 (6,250,000원×21동)	84,000	131,250	47,250	192
		보안등 시설보수 (6,250,000원×21동)	84,000	131,250	47,250	192
		청소,공원,환경정비, 재해예방 기타 (6,250,000원×21동)	84,000	131,250	47,250	192
	자산취득비	동사무소 전자복사기(11대) (4,300,000원×11동)	0	47,300	47,300	193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 내역			페이지
세항	목(세목)		'99 예산안	조정안	증(Δ)감	
보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운영	0	15,000	15,000	239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 (10,000원×100명)	0	1,000	1,000	291
유아복지	민간이전	영아간식비(민간)	111,648	150,148	38,500	345
	민간자본이전	신설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40,000	60,000	20,000	351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지도 업무추진	1,200	2,000	800	357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민원실 수리비	0	19,750	19,750	377
	자산취득비	지적민원실 비품	0	2,200	2,200	377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토목건설 업무추진	1,200	2,000	800	404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구간내 건물철거 공사	50,000	200,000	150,000	408

5) 예산안 총칙 : 원안과 같음

6)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2~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2. 14 ~ 12. 17)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과장의 동의를 받아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 8.22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결산승인안은 '98.12.14 제6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함.

2)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이월액	이월액 내역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세계잉여금
합 계	141,423,366	107,298,895	34,124,471	6,008,092	1,345,689	26,770,690
일반회계	129,174,725	102,720,194	26,454,531	6,008,092	1,345,689	19,100,750
특별회계	12,248,641	4,578,701	7,669,940	0	0	7,669,940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고
합 계	132,000,181	154,524,012	141,423,366	13,100,646	
일반회계	120,293,254	134,881,969	129,174,725	5,707,244	
특별회계	11,706,927	19,642,043	12,248,641	7,393,402	

##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원인미필)	불용액 $A-(C+D)$ =F	비고
합 계	138,053,695	112,788,064	107,298,895	6,007,092 (518,923)	24,746,708	
일반회계	126,015,956	108,209,362	102,720,193	6,008,092 (518,923)	17,287,671	
특별회계	12,037,739	4,578,702	4,578,702	0	7,459,037	

## 3)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음.

■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8. 8. 24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7. 12. 14 제6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109,182	1,060,030	1,060,030	49,152	
일반회계	1,082,222	1,036,139	1,036,139	46,083	
특별회계	26,960	23,891	23,891	3,069	

-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 현황으로는 흥은3동 산 11의 96일대 붕괴 사면 복구공사의 6개 사업에 대하여
  - 지출결정액 : 1,109,182천원
  - 지 출 액 : 1,060,030천원이며
  - 49,152천원은 불용처리되었음.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



제 3 장

其他 分野別 活動

1998.7.1~1999.6.30

區政 質問 I

行政事務 監査 II

民願處理 III

議員 세미나 IV



##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 I. 구정질문

#### 1. 의 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처리상황과 장래계획을 물어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바른 구정실현을 유도하고, 정치적 자세와 책임을 명확히 부담시켜 정책을 변경 또는 대체케 하거나 시정시키는 등으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다.

#### 2 현 황 (30인 75건)

구 분 회 기	질 문 의원수	질문 건수	질 문 내 용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 민 복지국	도 시 관리국	건 설 교통국	보건소
계	30	75	24	7	3	12	13	14	2
제63회 임시회 ('98. 9.24~ 9.25)	10	23	5	2		6	2	8	
제65회 정기회 ('98.12.10~12.12)	11	31	15	2	3	3	4	4	
제67회 임시회 ('99. 4.12~ 4.13)	9	21	4	3		3	7	2	2

### 3. 구정질문 및 답변

#### ◆ 제63회 임시회 제3, 4차 본회의('98. 9. 24 ~ 9. 25)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김화명 의원	● 북아현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서북운수에 대하여	<p>➔ [구청장] '84년도에 허가된 서북운수마을버스와의 노선연장협약은 금년 4월 29일에 맺었습니다. 노선연장 허가관계는,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과 도로여건이 형성되고, 또한 운송회사의 수지결산이 걱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상위법에 합당하고 적합하다면 주민의 출근 및 쇼핑 등 기타 나들이에 충분한 편의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허가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 구정방침이고, 또한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서북운수보다도 더 좋은 봉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행정을 떠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p> <p>몇 사람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노선을 연장하였다는 말씀은 잘못된 지적이며 서북운수 노선연장은 우리구 시의원, 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906명이 진정을 하여 왔기에 적법하게 허가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한 노선연장에 대한 주민호응도 조사도 조사자 300명이 주민들과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아현3동과 봉원동 두 곳의 차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밤 12시 이후의 운행에 의한 소음문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p> <p>마포아현시장과 현대백화점까지 연계한 것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지역경제를 말살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아현시장과 현대백화점을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선연장 때문에 북아현시장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경쟁적인 질적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아현동 주민의 이용에 따른 서북운수의 이익금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요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식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구에 대한 봉사 등을 권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16명을 준수치 않고 30~40명씩을 탑승시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확인해서 관계 공무원과 업체를 철저히 처벌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성장의 원** ● 하절기 수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 **[구청장]** 실로 보기 드문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년도에 서울시는 약 3천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인접구에서는 약 1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서울시나 인접구에 비하여 적은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가 2회나 발생했고 재산피해도 약 10억원에 달했습니다. 저도 복구현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구민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에 유달리 많은 산지 등에 대하여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투입계획을 서울시장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그러한 맥락에서 금번에도 시장을 3번 만나 협의한 끝에 서울시 피해복구 1차 예산 10억원중 5억원을 우리구가 받아와 복구에 투입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p>● 민원서류발급 전산망의 잦은 장애로 서류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p>	<p>➔ [총무국장 전원배] 민원서류 발급 전산온라인 시스템은 총 12대로 시민과에 주민등록 관련 시스템 1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 관련 시스템 5대, 지적과에 지적전산 관련 시스템 6대가 있는데, 이중 지적과 시스템이 연10회정도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교통행정과의 시스템이 월 2~3회 정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지적과 시스템은 마포하고 공동화일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용량상에 문제가 있어 다음달 8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분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p>
	<p>●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우리구 자체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p>	<p>➔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우리구에서는 구비 14억 8,600만원, 국비 24억 7,600만원으로 금년 5월 2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총 1,863명의 신청을 받아 현재 1,5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자, 재학생이나 중증장애인, 거택시설 보호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사업으로서 각 일간지와 TV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소식지와 플래카드,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포스터 약 1,200매와 안내책자 8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본 사업의 문제점은 언론보도와 같이 근로대상자의 연령이 15세부터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전업주부들이 다수 참여하는 문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조사하여 전업주부의 참여를 제지하고, 참여대상 연령을 25세부터 55세까지로 정정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특성상 생산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며 성과있는 사업발굴이 어려웠고, 가내 수공업자 및 힘든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적어서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0월 1일부터 임금 22,000원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25,000원은 22,000원으로 그리고 30,000원은 27,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인하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공무원 2명씩이 근로자 30명 내지 40명을 관리감독하다보니 문제가 있지만 금번 구조조정예 의한 잉여인원을 사업장 관리감독자로 추가 투입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은 대부분 저소득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로사업비는 이미 전년도에 책정된 사항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의 실업대책으로는, 관련 예산을 다시 책정할 시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해 예산을 투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답변) 하루의 일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작업케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족한 장비는 보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는 당초에 총무국에서 관장하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각종 기금을 실직자 구제금으로 전용할 용의는?</p>	<p>➔</p>	<p>다가 얼마 전에 저희 시민국으로 넘어 왔으며, 간부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p> <p><b>[기획실장 금동영]</b>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행정목적에 위하여 매년 법이나 조례에 의해 기금운용계획표를 수립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주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제도적인 사항으로서 건의하신 대로 실직자 구제금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조례와 법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며 또한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목적에도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고 봅니다.</p> <p>저희구의 기금현황은 지난 7월 31일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총 7개에 38억 9,70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여 수익률이 높은 신종 부금 등의 상품을 이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p> <p>실업자 구제금융 관계는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재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 노인복지정책에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p>	<p>➔</p>	<p><b>[서면답변]</b></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수 : 20,575명(구인구 354,387명의 5.8%)</li> <li>○ 경로당수 : 63개소 (구립 30, 지화 1, 사립 29, 미등록 3)</li> <li>○ 노인교실 : 9개소(구립 3, 사립 6)</li> <li>○ 노인의집 : 3개소 (북아현3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li> <li>○ 경로식당 : 2개소 (서부경로식당, 독립문경로식당)</li> <li>○ 재가노인시설 : 2개소 (서부재가 복지센터, 하안목련 주간보호센터)</li> </ul>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평 이하 150,000원.</li> <li>16~30평 160,000원.</li> <li>31평 이상 170,000원</li> </ul> </li> <li>· 난방비(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평 이하 250,000원.</li> <li>16~30평 300,000원.</li> <li>31평 이상 400,000원</li> </ul> </li> <li>· 서울시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비(월) 144,000원.</li> <li>난방비(년) 250,000원</li> </ul> </li> </ul> </li> <li>- 지원액 : 130,620천원</li> </ul> </li> <li>○ 노인교통수당 지급 : 20,57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 2,440,920천원 (1인당 월 20회분 10,000원)</li> </ul> </li> <li>○ 경로연금 지급 : 97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 375,4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월 생활보호자 (65~70세) 40,000원 (80세 이상) 50,000원</li> <li>· 1인당 월 저소득자 (전액) 20,000원, (부부감액) 15,000원</li> </ul> </li> </ul> </li> <li>○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 17,400천원 (개소 당 규모에 따라 100천원에서 350천원)</li> </ul> </li> <li>○ 지역봉사활동비 지원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 : 18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 101,920천원 (1일 활동비 5,000원)</li> </ul> </li> </ul> </li> </ul>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 가정도우미 운영  
도우미 27명, 수혜자 182명
- 서대문 경로이발소 운영  
1일 평균이용인원 25명
- 노인안부 문기(야쿠르트 제공) : 376명
- 노인의 집 운영 : 3개소 9명

■ 향후 보완대책

-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
- ※ 지원수준이 '98년도에는 25개구 중 16위  
이나 1999년도에는 운영비를 개소 당  
1~2만원, 난방비는 개소 당 년 5~30만  
원 인상하여 10수준으로 올리겠음.
- 지원기준
  - 운영비(월)
    - 15평 이하 150,000원.
    - 16~30평 170,000원.
    - 31평 이상 190,000원
  - 난방비(년)
    - 15평 이하 300,000원.
    - 16~30평 400,000원.
    - 31평~50평 500,000원.
    - 51평 이상 700,000원
- 예산액 : 143,000천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명 칭	위 치	대지평수	건평	비고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천연동 117-3 외	516평	700평	
홍은2동 노후복지센터	홍은2동 11-102	97평	250평	
북가좌2동 노후복지센터	북가좌2동 5-106	84평	250평	
홍제2동 노후복지센터	홍제2동 82-9 외	191평	250평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의 집 확대추진 : 창천동, 홍제3동</li> <li>○ 노인교실 확대추진 : 홍제4동</li> <li>○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확대</li> <li>○ 재가복지시설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li> </ul>
<p><b>최태중</b> 의원</p>	<p>● 구 수입증대의 일환으로 홍제1동 소재, 견인차량 보관소에 농수산물 공판장의 설치·운영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p>	<p>→ [구청장] 우리구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입방안으로 농산물직거래장을 개설하여 농민도 돕고 구민들도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곳은 현재 사유지고 견인주차장이 전문제도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 및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b>한한일</b> 의원</p>	<p>● 재활용품 수거제도의 개선방안은?</p>	<p>→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는 12개 구가 쏠동에 그리고 9개 구에서는 일부동만 실시하고 있으며, 4개 구가 실시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97년 7월 2일부터 연희2동과 남가좌2동이 실시하고 있고, '98년 4월 1일부터는 연희1동과 홍제4동 및 홍은1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대면수거제는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지만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인력수요 과다성 등 기존수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 또한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채택·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지역별 운행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께서 배출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현재처럼 수거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또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고 본 수거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출타자와 맞벌이 부부 및 노약자를 위해서 각 동마다 동사무소 등의 일정장소에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시간의 안내방송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수거시간대를 07시 이후로 조정하고 방송음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본 수거제를 8개 동을 더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4월 2일부터는 전동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입니다.</p>
<p><b>이기봉</b> 의 원</p>	<p>● 조례의 제·개정 입안 시 적법여부와 확인과 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구청장] 저희 공무원들의 실력부족에 대한 지적의 말씀에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문지식인 확보와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여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겠습니다.</p>
<p><b>최광진</b> 의 원</p>	<p>●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전지역 확산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p>	<p>➔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우리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96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는 5개 동 586구획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야간 사용료는 월 4만원으로서 '97년도 구 수입액은 1억 4,000만원이며 '98년도는 현재까지 1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당해 주택가의 주차수요와 수용가능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차량의 주차가 많은 곳부터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는 북부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인접하여 있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말씀하신 횡단보도는 현대아파트 입주자의 차량 진출입과 주민보행 편의를 위해 1988년에 설치되었는데 북부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이전이나 폐지문제를 검토한 바도 있었는데, 그 당시 아파트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1995년도에 약 4차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현행대로 횡단보도를 존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와 로타리간의 거리가 약 350m이고 로타리쪽도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를 로타리쪽으로 50m정도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 곳의 교통체증 원인은 북부고속화도로 진출입을 위한 차량이 집중된 때문인데, 향후 홍제초등학교 앞 하향램프와 문화촌 입구의 상향램프가 개통되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홍제3교와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건설안전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복개구간의 도로가 완공되고 또한 서울시 교통운영계획단에서 수립 중인 고속화도로 램프 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대책이 수립되면 교통량 분산과 함께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우리구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획실장 금동영] 지적하신 바대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많은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연초에 세수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건전재정운영계획을 세워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에 이은 거래감소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의 교부금에 차질이 생겨 세입예산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상에서 약 180억원 정도의 차질이 발생하였고, 구세인 사업소세, 이자수입 징수, 교부금 등 일반회계 1,160억원 중에서 약 2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연 2회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자금을 유보하고 기간을 늦춰 자금집행을 유보하면서 나머지 부족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여 적자예산을 집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재정을 꾸려 갈 예정으로 12월 현재 50억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서 내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p> <p>우리구 재정자립도가 40%를 약간 상회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에서 70억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고, 취득세, 등록세의 50%만 자치단체에 교부케 되어 있으나 10%만 더 인상하여 교부해 준다면 우리구의 세징수액은 100억원 정도가 되어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보며, 저희 구청에서도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각동 통장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을 구제할 용의는?</p>	<p>➔ [총무국장 전원배] 우리구 통 현황은 547개 통이고 현재 통장은 531명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억 1,600만원 정도입니다.</p> <p>통장은 행정보조와 구정홍보 역할을 하여왔지만,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등으로 통장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중이고, 또한 동 기능이 복지센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통일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되며 통일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정혜인 의원	<p>● 연희3지구 자력개발 사업지의 대지등기는 언제쯤 완료될 수 있으며, 당초 사업공정이 3~5년이었던 본 개발 사업의 완료시점은 언제이고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면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중지하여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p>	<p>➔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연희3지구 자력개발사업은 '79년 11월에 관리처분 및 건축계획인가를 받아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구청에서 하는 공공시설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나 주민들 자력으로 하는 건물개량은 현재 94% 정도가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6%까지 다 완료되어야 확정처분을 해서 사업을 종결하게 됩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개량을 완료한 주민들께서 대지등기를 못하여 재산권 행사 등 여러 면에서 실로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99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고 '99년 10월까지의 사업준공이라 할 수 있는 환지처분고시를 할 계획으로 2000년 상반기까지는 대지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김대봉 의원	<p>● 신촌역 일대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위한 행정 부재상태인데, 향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p>	<p>➔ [기획실장 금동영] 먼저 신촌역 주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대책을 강구치 못한 점과 그들의 불편요소를 개선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촌역 주변 의류상가에 찾아오는 외국인 쇼핑 관광객들은 주로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이며, 방문객은 1일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오전 10시경부터 1시간 내지 3시간 동안에 걸쳐 쇼핑을 하고 있고, 주요 쇼핑품목은 티셔츠와 액세서리, 신발 등입니다. 교통편은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약 12대 정도며, 신촌역 안전지대와 그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실정으로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신촌지역의 여건상 당장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재원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에 약 200평의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신촌역 앞 안전지대 및 주변놀이 공간에 주차하는 방안을 상가번영회와 관광회사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p> <p>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문공원 내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11월 3일에 개관하는데, 이 역사관과 연계하여 봉원사 영산제, 이화여대와 주변 의류상가 및 북아현동의 웨딩드레스 거리 등으로 하여 관광코스를 개발, 상품화하려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요, 취향, 그리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전통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산내 자연사박물관과 사진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구가 문화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도우미 활용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북아현동 재건축 아파트에 95세대가 입주할 시에 이대주변 및 신촌로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이화여대입구 일방통행길에서 아파트 진입로까지의 이면도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며, 주차구획선이 노면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 시에는 교통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진입로인 대신 초등학교 진입로에서 교육청 밑길은 일방통행로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주차구획선</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보충질문) 5. 6개월 전에 이미 교통문제에 대한방법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인데 공사공정이 90%에 달하여 곧 입주할 상환인 지금에야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사업승인해 줄 때부터 교통난이 불을 보듯이 예상되었는데도 그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사업승인을 해 준 것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p>	<p>을 폐지하려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민되는 바도 있지만, 우리구의 교통전문직을 투입하여 교통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려 함에 따라 여러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좀더 일찍 대책을 마련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늦었지만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p>
<p><b>기창표</b>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문공원 내의 노숙자 문제해결책은 무엇인가?</li> <li>● 공공근로자의 이해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li> </ul>	<p>➔ [구청장] 전국의 노숙자들이 서울로만 몰려들어 독립문공원도 지적하신 대로 노숙자들로 인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들을 마구 밀어낼 수도 없는 형편이라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의 성역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11월 3일 경에 개관하여 독립정신의 얼이 서려있는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숙자 문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공공근로사업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적정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모든 인력을 다 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구 관내 시민아파트 벽면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보충질문) 공사기간에는 비와도 주민의 피해가 없었는데, 공사후에 비 피해를 당하였기에 공사자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과연 피해 주민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p>	<p>→</p>	<p>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보다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관내 시민아파트는 1970년대에 193동 6,422호가 건립되었고, 현재는 3개 지구 33개 동 1,507호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철거되었습니다. 33개 동 1,507호도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및 공원녹지확충계획에 의해 2001년까지 정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지구 15개 동은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999년 6월까지 철거될 것입니다.</p> <p>금화지구 시민아파트 보수공사는 1995년 4월 18일부터 1996년 1월 27일까지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가 성수대교 붕괴 후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민아파트에 대해 전문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방법이 제시됐고 그 중 철거가 시급한 E급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인지 제시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2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보수 공사는 투자비용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적인 보수공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1996년 6월에 삼풍사고가 나자 지침이 강화되고 예산이 4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도장, 옥상방수공사,</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상수도공사, 굴뚝보수, 균열보수, 난간보수공사 등입니다.

벽균열 보수공사는 아파트 안전문제때문에 벽 전면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균열부분에 대해서만 퍼팅, 몰타르처리 등의 보수를 했으며, 이번 폭우로 벽면에 누수가 있었는데 보수공사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28년이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되었고 벽면이 조적벽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수기능이 상실되어 이번 폭우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로부터 보수공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방수공사계획을 세웠지만 주택공사에서 내년도 우기 전인 6월까지는 철거할 계획임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아래 방수공사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의 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여름까지 아파트가 존치될 경우에는 금년 중에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이미 개인에게 분양하여 시유지 사용을 승낙한 상태이기에 원칙은 건물주가 관리해야 하나 당초 시에서 지었고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공원화계획에 의해 철거가 될 때까지는 구조적인 면은 시에서 관리해야함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보수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굴착 승인사항을 사후에 동사무소와 구의원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의 요식만을 갖추기 위한 통보인가?

➡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먼저 공사승인사항을 의원님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승인사항을 구의원님과 동장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도로굴착을 하는데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부실공사 및 불의의 사고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등의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동장과 함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추진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용의는 없는가?</p>	<p>➔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작업지연 사항은 관계회사에게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시 상수도관과 하수관이 파손되어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매설하는 경우와 역으로 토목부서에서 도로공사시 가스관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사시 타기관과 협의하고 명예감독관이 입회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을 철저히 활용하겠고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p>
	<p>●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를 동시에 하지 않고 각각 시행함에 따라 도로굴착 중복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서면답변] 우리구 관내 지하 매설물 설치공사는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도시가스, 상수도 등 14개 유관기관 참석)를 개최하여 기관별 사업계획을 조정, 병행 시공토록 유도하고 있어 많이 개선도 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누수 및 도시가스의 누기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구청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상시 굴착이 가능한 도시가스, 체신, 상하수도 등의 소규모 굴착의 경우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굴착공사는 해당 본 공사시행시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각 기관에서도 긴급굴착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b>김중철</b> 의원</p>	<p>● 폭우시 창천동 일대의 하수구가 역류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보충질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송시 승패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는가?</p>	<p>➔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지난 폭우시 창천동 일대 하수가 역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침수원인은 첫째, 건물의 지하가 도로노면보다 낮고, 두 번째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박스에 문제가 있어 일시에 쏟아진 폭우에 침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박스의 내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수관계 전문가인 대학교수, 서울시청 하수계장, 우리구 하수과장·계장 등이 합동으로 창천동에서 한강변 공원펌프장까지의 하수도 내부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현대아파트와 다중쇼핑간의 복개지역은 이상이 없었고, 마포구 강화버스터미널과 마포소방서간의 박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포쪽 수로의 용량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 쪽은 3m에 2.3m 규모의 하수도가 두 줄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량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서강대교에서 한강쪽 수로간의 하수도는 좁게 축조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며,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과 이대, 연대 등에서 흘러드는 하수량의 측정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 쪽 하수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비 피해는 인재에 의한 것으로 피해 중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처리를 하고 있으나 룬살롱 등 유흥음식점 등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1종 근린시설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을 드립니다.</p> <p>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11시경에 저를 포함하여 창천동장 피해를 입은 창천동 주민 등 다수가 노상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우선 도로노면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천동 62번지 일대에 빗물받이를 설치키로 합의하여 현재 9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9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p> <p>보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봉원천 복개지역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관할구인 마포구로 하여금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수도 박스내의 퇴적물을 준설케 하였고 하수시설 단면이 불부합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약 4,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약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하수박스 내의 시설을 모두 개선하기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b>(보충답변)</b> 먼저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피해는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재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보상처리를 하겠으며 보다 충분한 보상대책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p>

◆ 제65회 정기회 제2, 3, 4차 본회의('98. 12. 10 ~ 12. 12)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전성장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는 민선자치 이후로 관선 행정시대와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li> </ul>	<p>➔ [서면답변] 기본적으로 관선은 중앙집권식 통치방식이며 민선은 주민자치의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보호와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민선자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관치행정은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통제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나, 민선자치는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앞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먼저 배려하는 행정체제입니다. 1991년에 구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 민선이 출범하여 그 동안 우리구는 관선시대에 비하여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놀랄만큼 변화했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자세가 친절하고 겸손하며 정직을 실천하는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고질적 장기민원인 장기미준공 아파트를 준공처리 하였고, 경의선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토지이용율을 제고키 위하여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 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위주의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구민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정신으로 구정에 참여하여야 민선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현 실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li> </ul>	<p>[서면답변]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 감사원의 판정에 의해 변상하는데 우리구는 지금까지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변상판정 등으로 지적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앞으로 회계관계 업무처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예방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p>
	<p>●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방치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가?</p>	<p>➡ [서면답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입안, 결정, 집행하는 도시의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63건(공원11건, 도로51건, 광장1건)으로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보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변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히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p>
	<p>● 국·공유지 사용료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p>	<p>➡ [재무국장 나송주] 국·공유지 점유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유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땅을 사용토록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없이 공무원 임의로 대부료를 하향조정 또는 면제하거나 5년 경과분을 결손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상 연체료는 연15%로 변상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경우에도 월 1.2%씩 12개월 동안 총</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

14.4%를 가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초에 공유재산관리제도 쇄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주민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1,000분의 25인 대부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료는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요율이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절차와 방법 등도 법정화되어 있는 사무로서 관련법령의 개정없이 대부료의 하향조정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부료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p>	<p>➔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적하신 대로 청소행정 분야는 우리구 전체예산 841억 중 19%에 달하는 16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가장 중요한 이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저도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에 미화원을 41명을 줄여 현재 294명인데, 앞으로 청소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화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5세가 넘는 사람이 120명 정도로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충원을 많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연말에 미화원 전국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노사협상을 하게 되면 미화원의 정년이 지금 60세 보다 단축되고 각종 수당이 줄어들리라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 160억 중 인건비가 109억 정도 될 것입니다.</p> <p>경영합리화의 요체는 인원을 줄여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량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써 지난 '96년도에 1일 306톤에서 금년도엔 229톤으로 약 12% 정도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재활용품은 '96년도 3만톤에서 금년도엔 4만 7천톤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2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를 직영으로 해 오다가 작년 6월 15일부로 5개 동을 대행처리함으로써 물량상으로는 64%에 달하는 쓰레기량을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세로 보아 비용절감을 기하고 장비는 늘려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게 청소행정의 경영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별도로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내년도 예산 6억 5천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5개 동의 청소대행과 쓰레기량의 감소 때문입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서면답변] 청소행정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의 기본업무로서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쓰레기의 감량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 등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금년도 청소분야 예산규모는 193억원이고(구 전체예산의 16%) 수입은 규격봉투판매수입 등 13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분야는 대표적인 재정투자가 많은 분야로서 원안자부담 이론만을 앞세워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규격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일체 신규채용하지 않고 감축하고 있고 금년에도 41명을 감축하여 5개 동을 추가로 대행업체에 위탁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차량 11대를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체 지역청소의 64% 가량을 민영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민간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영수거지역은 차량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등 작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대행업체에 비하여 작업효율성이 낮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화원 '1인당 적정 작업량'을 부과하는 등 민간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도 이제는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구청에서 단순히 수거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생활쓰레기 발생이 전 단계에서 감량화하고 재활용가능품목은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자원화하며,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재활용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b>김화영</b> 의원</p>	<p>● 대현제1재개발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p>	<p>분야에 청소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의식의 변화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b>김화영</b> 의원</p>	<p>→ [구청장] 익히 아시다시피 대현제1재개발사업은 서울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만큼 대현럭키아파트 관련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민간자율적인 주도로 추진하며 행정부서는 한 발짝 뒤에서 조합이 사업을 건진하게 이루어 가도록 법률적으로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야 구청에서 뒤쫓아가는 형태가 이루어져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조합이, 조합과 조합이 얽히는 등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과 절차를 거쳐 해결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산아파트 경우도 이미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준공처리를 하였던 경우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현대럭키아파트는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적인 면에서 볼 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당하고 옳다고 저도 공감하지만, 10년간이나 미해결 된 상태로 공중에 떠있는 대현럭키아파트의 해결방안이 없는데, 구청장도 귀찮다고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로 손을 떼면 대현럭키아파트는 20년, 600년이 지나도 준공처리가 안되고 조합원이 임시로 거주는 하지만 등기도 못내 일체의 재산권 행</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사를 못하며, 은행용자시 담보도 안되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p> <p>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힘을 등에 업고 구청장이 다소의 무리함과 여러 가지 문제의 짐을 안고서라도 오직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결심과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사심없이 떳떳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명예구청장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명예구청장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p>	<p>➡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명예구청장 제도는 당초에 주민의 참여행정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1985년도에 권장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덕망이 높으신 분들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현재 14명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청에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정홍보기능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숙원사업을 청취하여 구정에 수렴하는 등 구청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p> <p>(보충답변) 본 제도는 당초 그 설치목적이나 취지면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되었으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 관변 단체에 대하여</p>	<p>➡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바르게살기협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관변 단체는 법적으로 보조금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에서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의 배정, 집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배정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p>
<p><b>이문복</b> 의원</p>	<p>● 민선구청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대한 편견 불식 등 정당과의 원활한 관계유지 방향은?</p>	<p>➔ [구청장] 현행법상 구청장은 정당의 공천과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루고 당선되다 보니 당연히 지원해 준 정당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지만 행정은 전문분야인 반면에 정치는 비전문분야로서 행정에 정치를 가미한다면 그 행정은 실패한 행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이후에 어떤 이유로도 행정에 정치를 가미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여·야 정당에서 걸러진 민원이 구청장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여·야 구분없이 선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것은 받아 들여 무리가 없는 범주내에서 행정에 접목시켜 구정불신 해소를 위해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추후도 정당으로 인한 행정구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p>● IMF 시대에 따른 우리구의 축소경영 방안은?</p>	<p>➔ [구청장] 구 재정확보와 IMF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 살림은 자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살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가 아직은 짧고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보고 시행한 법과 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거의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립적으로 뜻을 모아 자치법과 세제를 바꾸고 교부금에 대한 규정도 바꾸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도를 높일</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자립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가 우리구보다 많아도 예산규모가 적은 구가 있고, 자립도면에서는 우리구보다도 높아도 구민의 복지정책 실현도는 낮은 구가 있는 점과, 예산규모가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산규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중요한 것임으로 지금 상황에선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대현2재개발구역 아파트의 무단 입주민에게 3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11억 4,000만원을 징수했고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많고, 부과기준과 관련되는 재개발시행시기 등으로 인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변상금이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제4동 청구아파트 재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도 부과기준과 관련한 적법성 등으로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1997년 6월에 29억원으로 재부과하였고, 미납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자진납부와 채권확보 및 가산금 5억 추가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설령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구민께서 저를 신뢰하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압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 우리구 사회복지구현을 위하여 자치규정을 개혁할 용의는?

➔ [구청장]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태로서 깊이 고려하여 볼 사항이지만 문화와 복지분야는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효율적인 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축소할 용의는?</li> </ul>	<p>→ [구청장] 구의 각종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토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 재량권 밖의 일이지만 검토하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비책은?</li> </ul>	<p>→ [구청장] 서울시나 다른 구를 보면 소위 주요 선호부서의 직원들이 승진 또는 근무평가·포상 등에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구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구민과 밀착된 격무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업무위주의 기준을 가지고 승진, 근무평가, 포상 등의 업무를 신중히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b>이기봉</b>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지로서는 관련자료 등이 매우 미흡한 독립공원역사관을 이 상태로 계속 개방할 것인가?</li> </ul>	<p>→ [구청장] 서대문역사관 추진은 사실 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어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5일에 개관하였고, 현재 매일 약 2,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관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 10년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셔서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의 유품들을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품으로 진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원산지가 일본인 나무가 있다면 속아내어 가능한 한 무궁화 같은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독립공원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구는 사적지인 8,000여 평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그러한 문제점 등이 돌출되고 있어 우리구에서 이 공원전체를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시장과 협의하여 연구하여 보겠습니다.</p>
	<p>● 북아현동 가구집 입구 변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p>	<p>➔ [서면답변] 무료로 운영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22개 동에 6,543구획이 있고, 유료주차장은 9개소에 527구획으로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8개소 586구획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서울시에서 '99년도 하반기부터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고 장래 공공도로상의 모든 주차구획을 유료화하여 민간인들도 자가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p> <p>북아현동 가구상가 입구변 공영노상주차장은 상가진입로에 있는 위치상의 문제점과 인근 지역의 부설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인들에게 제한없이 무료화 할 경우 주차혼잡이 가중될 소지가 있으며, 공공주차장을 특정지역만 무료운영할 경우 타 유료운영주차장과 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주간에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혼잡을 피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검토하여 한국전력의 공사마무리 후 '99. 1월중 주차장 운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p>
	<p>● 무악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유는, 모법에서 위임이</p>	<p>➔ [구청장] 청구아파트는 모두 17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1992년 6월에 착공하고 1994년 6월에 준공처리되어 총 14개 동에 862세대가 거주함에 따라 구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1994년 7월에 개발부담금 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착공</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없는 시행령은 무효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엄연히 개발부담법령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제8조의 부과기준법령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문변호사가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였는데도 담보물 하나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994년 6월 30일자로 준공검사를 해 주었고 조합은 해산했는데 누구에게 부과하실는지?</p>	<p>일을 기준으로 재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1997년 6월에 개발부담금 29억원을 재부과하였으나 납부치 않아 총 10회에 걸쳐서 가산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진납부토록 강력히 독려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b>민한일</b> 의원</p>	<p>● 안산의 자연전시관과 사진박물관의 건립소요 예산 조달계획과 건립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개관시 교통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연희동 산 5-58에 건립될 자연사박물관의 투입 공사비는 총 132억 1,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1,3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진역사박물관은 우리구에서 자연사박물관 옆에 부지를 제공하고 사진기자협회 주관으로 지상3층, 지하1층의 연건평 1,000평 규모로 자연사박물관과 대칭되게 건립하되 약간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상공모하여 지난 7월 20일 용역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p>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	---------

아울러서 안산의 자연상태를 보존하여 전시할 것이며 안산공원 기본계획에 의해 조성될 향토식물원과 야생화단지 등을 청소년들의 자연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개관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연계코스를 만드는 문화관광섹터를 구성함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설공사 중인 폭 12m의 안산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주민들께서 독립문공원과 봉원사에서 신촌방향으로 가는 안산 일주도로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 11호선의 인근 구역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서울시민 누구나가 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사진역사박물관 등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서대문구청 산하 공무원의 특별상여 수당을 연가보상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이나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0%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법정 연가보상일수 중에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연가의 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고 20일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올해는 특별상여금이 8,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연가보상비는 이보다 많은 9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용예산에서 재원을 감안해서 현재 삭감한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유보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 가급적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연가 잔여일수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하여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99년도 연가 보상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적정수준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안등 수리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현행 보안등 공사 및 유지보수체제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보안등 시설 및 개량공사를 하며 동에서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각 동별로 연간단가계약에 의거 보수업체를 선정,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동별 보수대상이 많지 않아 보수가 즉시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통합해서 구에서 시행하되 업체를 구분·지정하고 구의 전기 전문직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환인** ● 상암동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 [서면답변]

## 〈서면답변서 I〉

## '99 특수사업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 ■ 목적

다가오는 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서울을 보행삼불(불안·불편·불리)의 도시에서 보행삼편(편안·편의·편익) 도시로 바꾸어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사업위치 - 가칭 「새터길」(‘신촌’의 옛 명칭)

- 신촌현대백화점~명물거리(신촌역~연세대입구)~신촌기차역~이대입구~미라보 호텔

### ■ 선정사유

-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상암지구와 가장 근접한 서북권 지역의 중심
-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중심지
- 우리구의 문화행사인 ‘신촌문화축제’와 ‘북아현동 웨딩축제’등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가능

### ■ 사업개요

- 보행자 위주의 거리조성을 위한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 연장 : 1,500m

### ■ 추진방향

-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차가 없는 거리’ 조성
-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시설과 공연장 등이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 쇼핑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관광차원의 매리트가 있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와 아늑한 쉼터 등이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소로 조성

### ■ 향후 추진계획

- 위치선정 및 계획수립 : 1998. 10 ~ 12월
- 정비계획수립 : 1999. 1 ~ 12월
- 설계 및 정비 : 2000 ~ 2001

〈서면답변서 II〉

## 도시계획상세계획 설계용역

■ 추진방향

- 대상 :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홍제지구중심 등 5개소에 대한 상세계획 구역지정 및 상세계획수립 설계용역 실시
- 효과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효과적인 도시정비 유도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발주일로부터 1년
- 대상지역 : 홍제지구 상세계획구역 등 5개소

연번	구역명	위치	규모(㎡)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계	5개소		305,930	537	
1	홍제상세계획구역	홍제동 330 일대	156,930	217	'97.7.15~'99.6.30 용역시행중
2	가좌상세계획구역	남가좌1동 104 일대	69,700	102	'98.3.25~'99.6.30 용역시행중
3	북아현상세계획구역	북아현1동 65 일대	9,200	113	'98.3.24~'99.6.30 용역시행중
4	천연상세계획구역	영천동 69 일대	44,800		
5	충정상세계획구역	미근동 21 일대	25,300	105	'98.5.13~'99.5.12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 우리구의 등기소 유치 ➔ [서면답변] 현재 은평구 응암동 95-1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 등기소를 우리구 관내로 이전하여 우리 구민의 등기소 이용에 따른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측과 긴밀히 협의중이고 '98. 11. 13 등기소 이전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법원측에 통보하였던 바, 연희동 80-7 삼영연립주택 부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현장 확인 후 토지소유자측으로부터 매도가격을 제시받아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법원의 승인이 나면 재산감정 등을 통하여 매입가격을 협의할 예정으로 적정가격만 합의되면 조기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시후보지 및 가격현황

위 치	지목	면적	현재사용용도	공시지가	요구가격
연희동 80-7 (외국인학교입구)	대지	1,372.9㎡	삼영연립주택 3개동 16가구(20평)	1,350,000원/㎡ (총 1,853백만원)	1,875,000원/㎡ (총 2,574백만원)

**요구상의 원** ● 충청로동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주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의 일부구간(충정교다리~터널입구간)을 복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개공간을 주민에게 다목적 용도로 활용케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방향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 [서면답변] 경의선 철로 구간 중 충정교~터널입구 구간(연장 : 159m)은 현재 철도청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복개한 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안) 수립시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개대상구역 현황

- 연장 : 159m
- 면적 : 7,613㎡ (2,303평, 3층)
- 주차가능 대수 : 249대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이진수 의원	● 영세민 보호 강화대책 은?	<p>➔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부터 2월말까지 결식아동, 불우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참여와 지원아래 어려운 사람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근로자 중에는 전업주부랄지 생활이 어렵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근로자들이 시간만 보내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비 40억원을 가지고 매일 1,400명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업주부와 재산이 많은 자들은 제외시키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택보호자는 불가능하지만 자활보호자는 신청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임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취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로사업비에 대한 시의 지원이 있을 것임에 따라 앞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p> <p>그리고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자 2,255세대 중 임대료채납 234세대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려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b>기장표</b> 의원</p>	<p>●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은?</p>	<p>➡ <b>[행정관리국장 금동영]</b> 일반운영비는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를 포함해서 제세공과금 등 각종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급식비, 회의참석비 등 제경비로써 10개의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은 약 70억 3,9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약 9억원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비목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축소편성함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p> <p>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집행과정에서 같은 명목이 단가상에 차이가 있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부서별로 같은 품목을 구입할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단가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으며 견적서를 첨부, 참고하여 가급적 싼 가격으로 구입토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사후 감사를 통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 서대문독립공원을 우리민족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p>	<p>➡ <b>[서면답변]</b>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감옥시설로 8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고난과 아픔이 간직된 민족수난의 현장으로서 이 곳을 성역화하여 지난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p> <p>우리구에서는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가 독립운동의 발원지임을 널리 알리고자 역사관 시설들을 계속 보완하여 민족문화가 살아있는 성지로 조성하겠습니다.</p> <p>먼저, 독립공원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대형버스 등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독립문지하철역에서 역사관 정문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통행을 조성하여 달라는 건의</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를 서울시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구민의 휴식공간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민족 정신을 이어 받는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호국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순국 선열 추모음악회, 진혼 풍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p>
<p>● 도시가스 공사지역의 감독기능 강화책은?</p>	<p>➔</p>	<p><b>[생활복지국장 전원배]</b> 도시가스시설공사는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감독해 주신 결과 매설깊이는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준수되고 있습니다만 매설과정에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사사항을 통보하여 총체적인 지도감독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하여 기타 관들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p>
<p>● 각종 고지서 및 우편 물발송에 대한 개선책은?</p>	<p>➔</p>	<p><b>[재무국장 나송주]</b> 고지서 송달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나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로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송달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과년도 체납건 65,000건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도로 전출한 것이 30,000건이고 이 중 반송된 것이 12,000건으로 전체의 18.5%가 됩니다. 반송건에 대하여는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제1전출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제2·3전출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주민전산망도 서울시내 외 타 시·도는 불가능함</p>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p>니다. 행정자치부 전국주민전산망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전출자 등 소재가 불명한 자들에 대하여 몇 년 동안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는 다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b>김대봉</b> 의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li> <li>● 창천동 '현대백화점'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li> </ul>	<p>➔ [서면답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비 산정은 건설부에서 승인한 대한건설협회 발행, 표준품셈 및 노임, 자재단가에 의거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고 설계정산을 강화하여 공사비 과다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서면답변] 신촌로타리는 서강대교, 양화대교와 연결되어 있고 인천과 일산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서울도심지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백화점, 대학교 등 대형 교통유발시설물이 소재하여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급증과 많은 유동인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신촌로타리를 중심으로 지하철 출입구,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의 밀집으로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98. 11. 27 교통규제심의결과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2개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창천동 72-11 국민투자신탁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마포경찰서 등 교통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신촌로타리에 인접한 버스정류소를 횡단보도 위치에 적합한 곳으로 재배치하여 신촌로타리 부근의 교통체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b>최광진</b> 의원</p>	<p>● 중단된 각종 투자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가?</p>	<p>➔ [서면답변] 1988년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한파가 밀려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서 6,000불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우리구 재정 역시 각종 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98 실행예산에 의해 감액된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직원들 기말수당 120% 및 여비, 급량비 25%, 관서당 경비 20%, 일반수용비 20% 등 약 100억원을 절감하였고, 투자사업비 중 20여건 약 40여 억원을 삭감 또는 규모를 조정하여 전체 141억원을 절감,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한 결과, 봉급이나 수당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 재정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4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1,500여 공무원이 협심단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1998년에 중단 또는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구 재정수입을 면밀히 검토, 재원이 충족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 등은 서울시 등과 협의, 1999년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주차장 부지 등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면 개정할 용의는?</p>	<p>➔ [서면답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시설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총21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 20년 이상 장기</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미집행시설은 총 63건(공원 11건, 도로 51건, 광장 1건)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보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에 따라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히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p>

◆ 제67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99. 4. 12 ~ 4. 13)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이진수의원	<p>● 홍제4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도로개설)구획 내에 존치된 공공용지가 불법·부당하게 매각되었다면 이는 환불대상인가 아니면 무상양여 대상인가?</p>	<p>→ [구청장] 홍제3·4구역의 재개발현황은 11개동 946세대가 1990년 3월 20일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1992년 8월에 착공을 하고 1998년 12월 13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4구역 내 공공시설 84필지 4,949㎡가 있는데 이중 사업시행전의 도로가 11필지, 1,759㎡로서 이것은 우리구가 매각한 바 없습니다. 용도폐지되는 나머지 공공용지 2,146㎡의 서울시 소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1996년 11월중에 하면서 무상양여하도록 조합에게 철저하게 안내를 한 바 있는데 조합측에서 무상양여에 따른 택지비 하락을 염려하여 그랬는지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홍제4구역 조합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4구역을 비롯해서 우리구에서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전성장의원	<p>●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허가(승인)시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구청장] 관내 공동주택은 총72개 단지 226개동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아파트관리자와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에 관여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어 여기에 대단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에 관내 공동주택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지난 1998년 12월말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서 저회들의 감독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p> <p>구청에 공동주택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위해 법개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주민안전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14개 단지에 27건의 지적사항을 보수, 보강한 바 있습니다.</p>
		<p>➔ [주택과 서면답변] '91년도 이후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사업승인이 25건에 7,322세대, 사용검사가 11건에 3,421세대, 진행중이 14건에 3,901세대입니다.</p> <p>사업계획 승인시에 공사장 주변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로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조건으로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특히, 지적정리가 안된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나,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사용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p>
		<p>➔ [주택개량과 서면답변] 주택개량채개발구역의 인가조건은 당해 구역의 주변현황 및 구역여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함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소요증가에 대하여는 도로확충으로, 도시환경악화에 대하여는 공원·녹지조성으로, 기타 공공서비스 수요증가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공시설 확보방식은 기부채납에 의하여 하는 방식과 예산에 의하여 하는 방식이 있으나 재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확보는 원인자부담원칙(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입니다. 준공승인 시 인가조건 불충족으로 준공지연 및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변환경(교통, 도시미관, 공공서비스 등)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p>
<p><b>이기봉 의 원</b></p>	<p>●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등 우리구 관내 재개발아파트 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p>	<p>➔ [구청장] 청구아파트의 채권확보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장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도 순리에 맞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아파트 진입로 사항은 법상 진입로가 12m가 확보되거나 8m 도로 2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p> <p>두산아파트는 진입구가 2개소로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아파트 진입로 2개소가 8m 도로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니다만 우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측량오차가 3m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측오차 3%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하여는 도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면서 우리구민들이 10년 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왕좌왕 돌아다니다가 결국 입주를 했지만 재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들은 구청장이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신뢰할 신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오히려 박수를 보내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역소독에 대하여

➔ [구청장] 우리구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220ha, 연막소독 50회, 극미량 소독이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 효과가 적고 공해를 유발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출과 일몰 30분전에 실시할 것입니다. 1999년 2월중에 서울시에서 연막소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역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변과 기타 물웅덩이 등 유충서식지에 대한 분무를 강화해서 모기를 비롯한 해충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한일**  
의원

●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한 번은 짚어보고 검토해야 할 어린이 집에 대해 지적의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p> <p>우리구 7살의 어린이가 약 27,000명인데, 구립 어린이집 15개소에서 1,200명을 수용하고 있고 사립어린이집 74개소에서 3,5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에서 하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약 7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약 5,000명 정도밖에 수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현재 구립어린이집 15개소의 위탁현황을 보면 6개소는 종교단체에서, 5개소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4개소는 기타 임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p> <p>원장 등의 학력은 7명이 대학원, 6명이 대학, 2명은 전문대학 출신입니다.</p> <p>구립어린이집은 80년대 초에 어린이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새마을유아원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으로 초창기에는 관계규정 내지 운영규제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그런 사항을 시정하고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거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 금년 3월 22일부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p> <p>한한열 의원님의 지적대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그 간에는 재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장하듯 해 왔는데, 앞으로 반드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계약하기 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실사감독하여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위원회 위원을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사회복지 및 영유아 전문가 5인, 보육시설 대표 3인, 보육시설 교사 2인, 아동보호자 2인, 관계공무원 2인으로 보강하였으므로 신규 위탁시에는 보다 철저한 심사·검토를 거쳐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업</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체로부터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화교회 외에도 7개 위탁업체가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닐지라도 기타 운영적 면으로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업체가 어린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시설장들의 운영능력과 교육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어린이 교육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구민 건강증진의 일환인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 [보건소장 이미완] 건강진단사업은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시행하며, 검진기관 선정에 적합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검진기관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인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시설로는 검진진찰실, 검진대기실, 탈의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갖춰야 하며, 검진장비로는 비만도측정기 외 1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합당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난 '98년 12월 28일자로 검진사업 검진기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바, '99년 3월 23일자로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강된 장비로서 구매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청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시력검사표, 안저경 등을 '99년 1월 13일에 구매하였습니다.

## 질문의원

## 질문 내용

## 답변 내용

➔ 또한 주민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월중에 안저카메라를 구매하여 한층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시 시기와 '99년도 예상되는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사업자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의 일정에 따라 검진기관이 실제 검진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당초 4월초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건강진단 실시 기준 및 운영세칙이 늦게 제공된 관계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작수년도에는 공무원과 일반피보험자, 홀수년도에는 부양가족이 검진대상임으로 예상되는 금년도 수입은 '98년 7월 의료보험수가로 1차 건강진단 수검시 여자는 27,440원, 남자는 24,640원임으로 우리가 직접 부양가족을 최저 250명 검진을 실시할 경우 남녀 평균하여 약 651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0년도 사업활성화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대상자 검진시 그 이상의 수익도 예상됩니다. 수검비용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조합 보험금으로 전액 부담함으로 수검받는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의 사용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건강검진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사선실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위치가 구 한편에 치우쳐 있어 이용도가 기대이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무원 및 일반 피보험자 건강진단시 서대문구 직원만 검진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금이 약 3,25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주민건강증진과 주민의료비절감 뿐만 아니라 구 수익확대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고 또한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처음 시작하는 만큼 여러 의원님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b>최광진</b> 의원</p>	<p>● 다소 무리한 친절교육의 계속 추진에 대하여</p>	<p>➔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91년도 제2기 민선구청장의 취임 이후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97년도에 친절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어 '98년도에는 민원행정분야 최우수 기관 및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포상금 8,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들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15개 민간기업체를 방문,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친절위주의 제도와 행정체제 등의 많은 분야에 도입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예를 말씀드리면 외부의 친절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직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도모하였고 자체 강사를 양성하여 실습위주의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스마일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로서의 명예로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타 구청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구의 친절사례나 교육현장을 견학하고 있으며 우리구 강사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친절교육참여 때문에 발생하는 이석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직근 무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친절교육일정과 대상인원, 교</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주요사업부서의 기술 전문직 적재적소 활용·배치에 대하여</p>	<p>➔</p>	<p>육시간 등은 최소화하되,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친절점수는 전국최고수준인 80점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며 앞으로 친절 전국 1위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절교육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주요사업부서의 기술 전문직 적재적소 활용·배치에 대하여</p>	<p>➔</p>	<p>[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우리구의 총 정원은 1,247명으로서 '99년 4월 10일 현재, 행정직은 정원의 53.5%인 664명이고 기술직은 14.4%인 180명입니다. 기술직과 전문직은 복수직으로 채용 수 있는 인원이 23명인데, 그 중 국장급은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2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과장급은 4개의 보직을, 그리고 6급의 경우에는 전산담당주사 등 17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은 행정 및 기술직이 공통적으로 운영되어도 업무추진상 별 문제가 없거나 결원에 따른 신속한 충원이 불가피할 때에 인사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경우나 서울시 기술직 인사 등으로 부득이 전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복수직급 등 기술인력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주요사업부서 직원의 전보시에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 관내 고가차도의 환경 관리 미흡에 대하여</p>	<p>➔</p>	<p>[건설교통국장 최성근] 우리 관내에 있는 고가차도 중 증가로차도육교와 금화터널차도육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부도로</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과 도색, 세척,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저하가 예상되는 증가로차도육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 등을 통해 시정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도 통보하여 조치토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고가차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p>	<p>➔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홍은3동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97년 3월에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97년 말에 보건소 이전계획에 의하여 신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98년 7월 9일 이전기본계획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금년 6월에 주차장건립계획 공사가 발주되어 있어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우리구청과 서대문여성단체연합회, 서서울케이블TV 주관으로 무의탁 결식노인돕기 기금마련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p>
<p>정혜인의 원</p>	<p>● 연희제3자력개발지역 준공완료일은 언제이며, 준공에 대한 진척이 없을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미등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연희3지구 자력개발사업은 1979년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이나 추진되다 보니 먼저 개량하신 분들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사업을 단시일 내에 완료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환지 및 대지(사유지·구유지)구입에 대한 진척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p>	<p>➔ 지난해에 1년여를 걸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성과가 나와 그 성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금년 7월에서 9월사이에 사업완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람공고시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금년 5월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공람공고 중에 공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공람공고를 마치면 금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가가 끝나면 금년 7월에서 9월사이에 환지확정처분고시를 하게 되어 비로소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산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산조서에 의해서 돈을 내 줄게 있고 또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2000년 7월에 등기축탁을 하게 되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입니다.</p>	
<p><b>김희형</b> 의원</p>	<p>● 서대문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구청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부득이 만들어낸 골육지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례로써 허가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당도 사회적 지위도 가리지 않고 우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적절히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구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표</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구의원 선거에서의 당락에 상관없이 이 나라 제2건국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품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명예구청장제는 구청장의 짧은 지식을 개인적으로 보충해 주는 친목단체와 비슷합니다. 동시에 명예구청장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며 또한 공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명예구청장제는 저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p>
	<p>● (보충질문) 명예구청장 제도가 구청장의 친목단체라면 공식적인 직함으로 사용치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p>	<p>➔ [구청장] 제가 명예구청장 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정정하면서 이 명예구청장 제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대다수의 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해 감에 있어 뒤에서 도움이 되어 달라는 취지의 제도로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여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잘 운영토록 격려하실 사항이라 생각하오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대현제1재개발건에 대하여</p>	<p>➔ [구청장]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대한 저의 간곡한 심정은 이미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오히려 우리의회에서 저에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도록 격려의 의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간곡한 충정과 구민을 아끼는 저의 마음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재량권의 일탈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에 구청장의 재량권이 일탈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p> <p>대현럭키아파트는 서울천도 600년을 기념하여</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앞으로 600년 이후에 뜯어볼 수 있는 타임캡슐 속에 영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들어갔던 사건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해결한 걸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p>
	<p>● (보충질문) P모 민원 심의위원은 적격자인가?</p>	<p>➡ [구청장] 정확한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 P모 민원심의회위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부적격한 자가 심의회위원이 되어 부정할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치 못한 위원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p>
	<p>●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관하여</p>	<p>➡ [구청장] 백련산 체력단련장은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조직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단전호흡을 16년간 해오면서 제가 몸담고 있던 다른 구청에서는 10년 동안 봉사해왔고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이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데 반절은 제가 수련장을 만들어 추진했으며 서울시청 수련장도 역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백련산 체력단련장의 건립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취약해서 제가 서울시청 및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받아왔습니다. 우리구민을 위해서 2,000명이 동시에 수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새벽과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격려해 주고 박수를 보내줄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를 사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보충질문) K모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서로 백련산 체력단련장을 위해 자기가 10억원의 예산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가? 만약 K 국회의원이 받아 왔다면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p>	<p>➔ [구청장] 국회의원이 우리구민을 위해 애를 써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받아 왔는데 아무말 없이 딱 덮어두거나 구청장이 혼자 한 것처럼 한다면 그 분이 앞으로 우리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구정을 위해 과연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일에 힘쓰지 않았다고 선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의원님과 제가 판단할 최종적인 가치기준은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길이나 하는 것인 만큼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충정이려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b>오관인</b> 의원</p>	<p>●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감축과 최근 명예퇴직에 따른 정원부족 부분에 대한 대책은?</p> <p>●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른 자금지원과 정책 지원방향에 대하여</p>	<p>➔ [구청장] 1998년 10월 7일부로 제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국 4과를 감축하여 5국 23과로 분리를 하고 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에 흡수하는 조치를 했으며, 총 184명을 감축했습니다. 1998년 10월 7일 이후의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80명으로서 정년퇴직이 26명, 명예퇴직이 32명, 의원면직이 22명입니다. 정원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써, 구조조정 이후에 84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초과인원 대부분이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2000년 말까지 퇴직예정자들입니다. 향후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와 현원부족 부서에 대해서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p> <p>➔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정부에선 재벌위주 경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중소기업청까지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 중소기업이 약 130여 개가 있는데 음식용품기업이 7개소, 섬유·가죽제품 기업이 43개소, 종이·인쇄업이 33개소, 금속·전자업이 23개소, 목재업소가 3개소, 완구·기타가 6개소로 종업원수는 2,700여명이 됩니다.</p>

## 질문의원

## 질문 내용

## 답변 내용

그 동안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용자실적은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45억원이 용자되었는데 보통 4~5억원 정도 용자를 하다가 작년에는 기업이 어려웠던 관계로 16억원을 용자했습니다. 용자신청공고를 15일 내지 20일간 실시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은행에서도 담보조사와 은행용자 받는 과정에서 한 2개월이 소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최단기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담보없이 용자가 안되고 있으나 잠재성이 있는 신진기업과 벤처기업 등에게는 담보없이도 용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구정책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되며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돼서 벤처기업은 담보없이도 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유진상가에 금년 하반기쯤부터 신진벤처기업 등 신지식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정부통신부 등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등에 대해 협의해서 용자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 외에도 공공근로자 71명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어려운 일손을 도왔고 IMF로 판매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거래장터를 4회 운영하여 4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96년도에 시카고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여 10개 업체가 3차 연도 총 4억 5,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올려 미국 전 지역으로 홍보하여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본인들이 와서 웨딩드레스를 사고 있는 북아현2동의 웨딩특화거리가 명소가 되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아현동 가구단지도 가구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결혼할 예비부부들이 이 곳에서 웨딩준비도 하고 가구도 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홍제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는 대기업과 합동재개발을 하는 식으로 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 중소기업체 50여곳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중소기업협의회와 1년에 4차례 씩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교환도 하는 등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나라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장표**  
의 원

● 안산, 백련산, 금화산 등 관내 자연경관을 언제까지 훼손시킬 것인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께서 공원 및 입야 주변에 밭 경작을 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함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에서는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3월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안산 등의 인가주변 무단경작지 등에 살구나무, 감나무 등 약 3,500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4·5월중에는 안산의 천연동 산복도로 주변에 단풍나무와 산벚나무 500여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무단경작금지제도 간판 50여 개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무단경작을 근절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에 일제히 정리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에는 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고발조치 등으로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정전반에 걸친 각종 정보수집활동체제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li> </ul>	➔	<p><b>[구청장]</b> 구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구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구정에 접목시키는 인터넷 전담창구를 만들어 운영중이고 우리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특수사업으로 개발하겠으며, 4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 동에 주민공유 인터넷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창의성을 발휘케 하고 우리구 여성구정평가단 등 구민 모두가 우리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노인정의 도박장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li> </ul>	➔	<p><b>[생활복지국장 전원배]</b> 우리나라에는 아직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고스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구 관내 66개소 노인정 중 몇 군데 노인정에서도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분들께서 다른 쪽의 건전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된 노인정은 66개소로 노인분들이 6,700명이며, 60세 이상이 약 21,000명입니다. 남자가 9,687명, 여자분이 11,313명입니다. 이중 1,000여명의 노인분들이 저소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1명의 가정도우미를 지원해서 이 분들을 돌봐드리고 있고, 4개 노인시설에서 약 450명에게 무료점심을 드리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경로연금을 연간 19억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노인교통수당을 21,00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그리고 66개소 경로당에 1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경로이발소와 경로미용실에서는 그간 약 8,0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깎요금으로 이발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5억원을 들여 천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장판과 도배를 해 드렸고 사랑나들이라 하여 4회를 걸쳐 100명의 노인분들을 나들이를 시켜드렸으며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119구조대와 비상벨을 연결하여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350명에게 야쿠르트를 계속 대드리고 있고 71분에게는 유선방송을 무료로 설치해 드렸으며, 또한 65명의 TV와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등 노인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 II.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가. 감사기간 : 1998. 11. 30 (1일간)

나. 감사대상 : 의회사무국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조재구 의원, 간사 최광진 의원

구분 반별	감사위원	대상	사무보조	비고
1 반	반장 : 허준구 의원 반원 : 최광진 의원 김대봉 의원	의정업무	전문위원 이상헌 의사담당주사 박천기 직 원 권오상 장혜경 성기주	
2 반	반장 : 이문복 의원 반원 : 정혜연 의원 김종철 의원	의사업무		
3 반	반장 : 이기봉 의원 반원 : 최태중 의원	의안업무		

라. 감사결과

1) 총괄 : 총 5건 (시정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2)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의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회요구 처리</li> <li>○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li> <li>○ 회의록편집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집회 요구처리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전문위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할 것.</li> <li>-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내지 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할 것.</li> <li>- 회의록은 영구보존문서로서 편집 및 발간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정정사항 등은 정확한 표기가 되도록 조치할 것.</li> </ul>
의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의안문서 배부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의안문서는 회기전 충분한 기일을 두고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의안배부 실태를 보면 집행부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기일 촉박하게 배부되고 있어 각종 조례안등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운 바 향후 각종 자료의 준비 및 의안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3) 건의 및 기타사항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의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행사시 의원의 의전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요망</li> </ul>

## 2. 총무위원회

가. 감사기간 : 1998. 11. 26 ~ 12. 2 (7일간)

나. 감사대상 및 사무범위

1) 감사대상 : 1담당관 2국 1소 10개 동사무소

- 부구청장직속 :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재 무 국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사무소 :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2·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제1·2·3동

2) 사무범위 : 1998년도 중 처리한 구행정 사무 전반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최용완 의원, 간사 김대봉 의원

1) 국별 감사반

구분 반별	감사 위원	대 상 부 서		사 무 보 조	비고
		국 별	실·과별		
제1반	반장 : 오환인 의원 위원 : 기창표 의원 한한열 의원	행정관리국 (5과)	총 무 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문위원 : 이상현 의사담당주사 : 박천기 직 원 : 박영갑 김종일 장혜경 신성운	
제2반	반장 : 이기봉 의원 위원 : 유규상 의원 김대봉 의원	재 무 국 (4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제3반	반장 : 정혜연 의원 위원 : 김정현 의원 조재구 의원	부구청장직속	감사담당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2) 동별 감사반

구 분	감 사 위 원	감 사 대 상	비 고
제 1 반	정 해 연 의원 김 대 봉 의원	충정로동, 천연동	
제 2 반	오 환 인 의원 한 한 열 의원	북아현 제1·2·3동	
제 3 반	조 재 구 의원 기 창 표 의원	대신동, 창천동	
제 4 반	이 기 봉 의원 유 규 상 의원	연희제1·2·3동	

라. 감사결과

1) 총 괄

구 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104	12	55	37	
감사담당관	6	3	1	2	
행정관리국	35	3	14	18	
재 무 국	22	1	13	8	
보 건 소	13	2	11		
10개동	18	3	10	5	
기타(공통)	10		6	4	

2)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p>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집행시 최종 결재권자 결재전에 자체 감사부서로 하여금 사업 물량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 '98년도에는 23건을 실시 사업비 62,923천원을 감액 조치한 좋은 감사제도임. 앞으로도 이 감사제도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실시에 따른 타당성 검토, 사업집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소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참여, 유관기관 사전협의 등 사업집행에 따른 사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후 각종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실시범위의 확대를 장려함.</li> <li>○ 정순영 감사담당관은 '98년 3월에서 5월 중 이화여자대학교 특강을 통한 대외활동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직·간접으로 심어주고 지방자치제도가 건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li> <li>○ 담당관·각 과장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과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일부 과장은 업무숙지도가 떨어지고 질의에 답변도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 그러나 정순영 감사담당관은 보직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업무과약이 정확하고 보고도 성실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장을 떠나지 않는 등 수감자세가 매우 성실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 대한 태도도 겸손하였으므로 귀감이 되고 있음.</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청 연간 각종 행사현황을 보면 '98년에는 47건에 행사비용이 156,036천원이며, '97년에는 38건에 340,03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 줄었으며 IMF 이후 예산절감의 노력이 뚜렷이 나타남. 특히 문화체육과 행사현황을 보면 '97년도 23건 271,823천원이고, '98년도 14건 57,859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무려 66%나 절감하였음.</li> </ul>

부서명	우수 및 장려 사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하였던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광장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장애인·노약자 등이 구청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할시 호출버튼을 누르면 도우미가 안내하여 업무를 처리하며</li> <li>- 구청 층별계단, 화장실입구, 승강기 옆에는 유도블럭, 점자표시판, 자동음성장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li> <li>- 또한 구청광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선 설치, 종합상황실에는 휠체어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승강기 안내표시를 하는 등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로 권장함</li> </ul> </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자연사박물관 추진, 사진박물관 유치등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노력이 돋보임.</li> </ul>
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과 행정8급 김운주양은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여 이해가 되도록 관련업무를 잘 설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수행을 아주 잘하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표창상신을 의뢰함</li> </ul>
보건소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은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고온 및 수해 등으로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등이 발생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격리하는 등 제반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방역사업의 모범이 되므로 관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더욱 장려하기 바람.</li> </ul>

부서명	우수 및 장려 사항
보건소 지도과	<p>○ 방문간호실 박향자 간호사는 방문간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방송·언론 등의 불우이웃돕기 프로에 소개시키는 등 적극 노력하는 참된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으로서 우수사례를 보면</p> <p>사례1) 흥은 2동에 전세 500만원에 월세 12만원으로 햇벌도 들지 않는 지하셋방에서 결핵으로 거동도 못하는 남편과 6명의 자녀부양을 맡고 있던 전쌍임씨를 11월 11일 KBS 1TV에 방영토록 노력하여 후원금 1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이 답지하도록 함.</p>
보건소 지도과	<p>사례2) 10평 남짓한 1500만원 짜리 전셋집에서 다섯식구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던 한태희씨는 당뇨와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부인은 고혈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이를 불교방송국에 간청하여 10월 16일 '거룩한 만남'프로에 방영케함으로써 많은 각계의 성금이 답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박봉이자만 불우이웃들에게 쌀과 라면을 제공하는 등 타직원의 귀감이 되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함.</p>
북아현 3동	<p>○ 북아현 3동사무소에서는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 편철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을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타부서의 모범이 됨.</p>
대신동	<p>○ 각종 공문서 서류편철 상태가 양호하며 민원실 근무직원 전화응대가 아주 양호하여 타부서의 모범이 됨.</p>
창천동	<p>○ 민원실 환경정비 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민원근무 공무원 복장이 아주 단정하여 타부서의 모범이 됨.</p>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사담당관	진정민원 접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는 연 평균 1,000여건으로 접수된 민원서류를 대장에 등재 후 해당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등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알려져 이웃 또는 제삼자 모든 이해관계자의 분쟁발생이 예상됨으로 진정민원 처리부서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진정민원 처리과정에서 진정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li> </ul>
총 무 과	북아현2동 청사 및 남가좌2동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아현2동 및 남가좌2동 청사의 평당 건축비를 보면 각각 460만원 및 410만원으로 일반적인 건축비 평당 230만원 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위 건물은 물론 앞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실질적인 공사가격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li> </ul>
	구조조정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부일반부서는 인원을 증원하고, 공사부서는 감축하는 사례가 있는바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하여 행정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시정바람.</li> </ul>
	통반구조조정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각종 통반 구조조정이 미흡하므로 (21개동 중에서 6개동은 전무) 행자부 발행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방향을 참고하여 시정요망.</li> </ul>
	새마을소득 지원금 회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소득지원금 회수에 있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독촉이 미흡하고 소재 불명자에게 독촉장 발부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체납자 소재파악 후 독촉장 발부하고 소재 불명자 등은 연대보증인에게까지 법적 조치 강구요망.</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관변단체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이 동별 분기당 40만원, 연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흡하므로 관변단체 활성화 방안강구(인센티브 도입 등)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개선요망.</li> </ul>
	파견근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10. 7 기구조정에 따라 정원조정을 하여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기 파견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세무2과 행정6급 조재현외 7명은 원소속으로 근무명령을 하던지 파견근무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여 정·현원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파견근무를 지속함으로써 원소속부서에는 정원보다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력 POOL인원 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li>○ 또한 파견자는 특수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파견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li> </ul>
	특별상여수당 지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상여수당의 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특별위로하는 차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시 지급받지 못한 타직원의 불만과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직원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바 법정연가를 업무 등으로 다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활용하고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주도록 예산편성 되어있으나 현재 구금고의 재정형편상 연가 보상비를 줄 수 없는 실정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그 금액을 같은 종류의 수당인 연가 보상비로 활용, 지급함으로써 인하여 격무 등으로 휴가를 가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 직원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소관 53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는 회의 등 활동 실적이 거의 없으며 또한 위원회 자료도 허위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감사에 지적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정바람.</li> </ul>
	컴퓨터조작 능력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로 컴퓨터를 구입한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담당주사 이상 조작능력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인 바 앞으로 전자결재, 인터넷 활용 등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li> </ul>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함에 있어 타구에 비하여 인원이 많으며 사건 수임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원의 수임료가 지불되고 있으며 또한 고문변호사 모두 법조경력도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활동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위촉변호사 7명을 5명으로 하고 민·형사, 행정, 검찰출신 등 각 분야 별로 1명씩 위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임범위를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할 수 있도록 확대 요망.</li> </ul>
	공무원 전산교육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6급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1인 1대 보유하고 있으나 교육이 부족하고 사용하지 못함으로 비생산적·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산계에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li> </ul>
	전산실 보안유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을 운영함에 있어 과는 3층에, 전산실은 5층에 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없으며 전산실 내벽은 철망으로 보수되었으나 외벽창에는 보안 철망이 미설치되어 보안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li> </ul>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 방 위 재난관리과	민방위장비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민방위방비를 관리함에 있어 장비 불출 근거서류가 미비하며, 치장장비와 교육용장비 구분이 안되는 실정인 바 장비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치장장비와 교육용장비를 구분보관하고 현황판을 항상 유지 보관할 것이며, 장비(방독면) 보유년도 파악 후 정비보완 하여야 할 것임.</li> </ul>
	동원훈련 소집 연기자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원훈련 소집연기자를 보면 일부 근거서류가 부정확한 경향이 있는 바 동원훈련 소집연기시 정확한 근거서류 첨부하여 확인한 후 연기 조치 요망.</li> </ul>
재 무 과	서화류등 예술품 보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화류 등 예술품의 관리는 물품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자의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지시공문이 시달되었고, 전년도 감사에 지적하였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망.</li> </ul>
	재물조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재물조사 실태를 보면 구청 각부서 및 동사무소에 총관리대장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구함.</li> </ul>
	서류철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서류를 편철함에 있어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서류편철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교육 등을 강화하여 서류편철을 규정대로 하여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무과	세외수입 관리 사항	<p>○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주 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과 세정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 세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능력의 부족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미흡하고</li> <li>-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특수세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으며</li> <li>-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능동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피동적인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바</li> </ul> <p>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경영마인드 및 기업경영 원리 도입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의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p>
	각종 공금은행 예치 사항	<p>○ 각종 공금 등 예산을 이자소득이 낮은 한국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바 '98년초 다른 금융기관은 1년에 최하 18%, 당시 상업은행은 12.8%라는 최저의 이율로 구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타은행과 계약하던가 이것이 어렵다면 타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토록 요망함.</p>
	재산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성 사항	<p>○ 재무과 각종 업무처리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인사가 절실히 요구됨. 예를 들면 확실적인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특히 소송업무, 무단점유재산업무 등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됨.</p>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재무과	공사계약과 시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이후 '97년 말부터 '98년 현재까지 시공업체의 부도사태로 공사가 3~4회 중단된 사례가 있어 인부들의 노임문제로 구청에서 농성이 발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이미지도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모든 공사입찰 계약시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기 바람.</li> </ul>
	물품구입절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소액(10만원 미만) 물품구입에 있어 6~7단계의 복잡한 결재과정이 있어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소액 물품 구입시 소관부서에서 물품 구입 후 영수증 첨부하여 재무과로 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하여야 할 것임.</li> </ul>
	기증품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증품을 관리함에 있어 비품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도난방지 및 기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 대장 비치 요망.</li> </ul>
	인쇄물 구매방법 업무처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쇄물을 구매 체결함에 있어 특정업체에서 162건에 약 3억 상당액을 납품하고 서류상으로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인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쇄업자와 공무원간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연초에 각 부서별 연간 인쇄물량 수합 후 연간 단가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인쇄금액도 낮아지고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li> </ul>
	토지매입절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매입비: 6억원)을 편성함에 있어 일정한 금액초과 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책임담당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 무 2 과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등록은 25개 구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우리구 '98.10월말 현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목표량의 41%로 구 수입 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유관단체 간담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 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li> </ul>
지 적 과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악청구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연구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의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건물 착공일이 '92. 6. 30이므로 '92. 9. 30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의 16개 조합에 부과 통지하여야 함에도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94. 3 18 부과 조치하여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약 34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는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사료되는 바 당시 공무원의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함.</li> </ul>
보 건 소 행정 과	물품구매 업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조항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업무상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률인 바 대부분 위 계약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 계약업무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앞으로 개선하기 바람.</li> </ul> </li> <li>○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진 등으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바람.</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건소 행정과	물품구매 업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및 단가심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심사위원회 위원 선임규정이 미흡하고, 임명된 위원임기도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인 바 명확한 위원의 선임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li> </ul>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함에 있어 차량유류난에 유류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바 시정 바람.</li> </ul>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사업을 함에 있어 방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보건소 지도과	결핵환자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결핵환자는 약을 복용하면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결핵은 전염성이므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li> </ul>
보건소 의학과	중요고가 의료기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고가의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있는 X선과 등 7개실 운영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대체로 관리 잘하고 있었으나 운영일지 관리 및 물품대장 비치 기록상태가 미흡하며 청결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시정하여야 할 것임.</li> </ul>
	방독면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약품은 교체토록 하고 대장에 과장이 결재를 함에 있어 결재난을 별도로 만들어 하지 않고 수령량난에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으므로 시정바람. 또한 과징금 징수부는 있으나 징수금 관리대장이 없으므로 시정하기 바람.</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건소 의학과	의약품업소 지도단속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보건의 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제조 및 유통의 근절을 통하여 하고 의약품의 유통 질서확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의료·약사·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보건소 공통사항	문서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문서를 관리함에 있어 기본적인 문서 목록철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서의 관리·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비된 사항은 시정하기 바람.</li> </ul>
	예산의 편성과 집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보건소에서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li> </ul>
공통 (공사발주 주관과)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비 예산지출을 보면 '98년도에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설계비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금액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설계비용을 절감하여야 할 것임.</li> </ul>
공통 (전부서)	조직개편 이후 업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계장제를 폐지하였으나 사무분장상에는 조직개편전과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서울시 지침과 연계하여 호청과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li> </ul>
공통 (납세고지서 발부 전 부서)	각종 세금 징수 방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퇴거 및 전출자에 대한 고지서 납발로 징수율 저조는 물론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li> </ul>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전부서)	사무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서류를 관리함에 있어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여야 함에도 문서관리 실태를 보면 문서목록, 문서편철 등이 제규정에 의거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되어야 할 것임.</li> </ul>
	감사요구자료 제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행정사무감사전 각종 요구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였으나 요구한 자료와 다른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중복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미흡한 바 시정하기 바람.</li> </ul>
	일반적인 업무추진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행정업무 추진시 다른 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사전조율하여 공문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서간 통계사항 등이 맞지 않는 등 부서간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바람.</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충정로동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방독면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화생방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계획서가 미흡하므로 시정바람.
	무허가 건물관리 사항	○ 무허가건물 관리장부 및 고발상태는 양호하나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전 후 사진첨부 등 증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천연동	서류관리사항	○ 각종 서류를 관리함에 있어 서류목록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색인부 기록이 미흡하므로 시정바람.
북아현1동사무소	소규모사업사항	○ 소규모 사업의 일환인 보안등 수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입찰시 구청에서 단가를 책정하여 일괄시달되어 인건비만 입찰을 보는 실정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주민복지사항	○ 한가족맺기운동 등 주민복지 시책에서 수혜자를 매월 점검하여야 할 것임.
	민방위 장비관리 사항	○ 민방위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구급낭 등 모든 장비를 정비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북아현2동	각종 문서 관리사항	○ 각종 공문서에 대하여 목록작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민방위 장비 관리 사항	○ 민방위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대장정리는 물론 장비함에 현황표 부착 등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임.
대신동	민방위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장비관리가 미흡하고, 생필품 물가안정 대책이 미흡하니 시정바람.
창천동	각종 공문서 관리 상태 등	○ 각종 공문서 편철이 미흡하며 회의실 환경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미흡하므로 시정바람.

4) 건의사항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p>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중 각종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총 52건에 1억 9,150만원을 변상 또는 환수조치하여 예산에 대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우리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음.</li> <li>- 앞으로 각종 감사를 통해서 비리공무원을 적발하여 문책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각종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및 사전감사에 비중을 두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li> <li>- 예산집행분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감사 및 조사를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우리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동은 3년 주기로 동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출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으나 구청 각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주기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구청 전부서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건의함.</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10. 7일자 기구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 구청 각과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며 각 동사무소 정원조정은 상주인구를 기본으로 하고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중에 1명씩 추가정원을 책정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동과 창천동의 경우 대신동만 유동인구를 적용시킨 사실이 있으나 향후 정원책정시에는 주간활동인구가 많은 창천동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면적, 도로의 길이 등 동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변단체의 활동사항을 보면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 바 향후 관변단체 지원은 실적에 의거 지원해 주어야 하고 정액보조식의 지원은 지양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li> </ul>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무리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술직의 정원부족은 신속히 메워야 하고 서울시의 무리한 기술직의 인사교류로 인하여 전반적인 기술직의 사기저하와 자치구의 실정에 맞지 않아 막대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술직의 인사정책이 절실히 필요함</li> <li>○ 각 동별 소규모 사업은 각 동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여 형평성에 예산의 편성이 어긋나며 또한 소규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사업이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바 주무부서에서는 각 동에 지침 등으로 시달하여 소규모 사업을 적기적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li> </ul>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10. 31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컴퓨터(팬티엄 586급) 655대 중 139대는 메모리가 8메가바이트인 바 이런 용량부족의 컴퓨터로는 업무의 신속·능률적 처리가 곤란하므로 예산의 어려움(8메가 상승가 1대당 3만원)은 많겠지만 향후에 컴퓨터 신규구매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메모리의 확장을 건의함.</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예술에 대한 접촉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회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공연함에 있어 대다수의 공연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공연은 관객수가 적어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때로는 구·동 공무원을 동원하여 좌석을 채우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공연은 사전에 판단하여 공연자체를 취소하던지 또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목적이라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소수일지라도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li> <li>○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행사주관 및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소속부서 예산은 그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건의함.</li> <li>○ 이대앞 신촌역 일대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대기차고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각종 공연과 이벤트 행사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건에 부합되는 신문을 구독해야 할 것임.</li> <li>○ 문화회관 행사를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부대경비 예산을 절약하고 모든 행사 강좌프로그램을 고급화하고 강사의 수준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임.</li> <li>○ 서류를 관리함에 있어 모든 증빙서류를 정비해야 하며 색인목록도 작성하여야 할 것임.</li> <li>○ 물품구매시 1개 업체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많으므로 품목별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임.</li> <li>○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을 배치 직영함으로써 인건비의 과다지출과 운영에 경직성 행정관리 위주로 치우치고 있으며, 유사한 시설인 체육회관은 Y.M.C.A.에 위탁경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양질의 체육강좌 및 체육시설 이용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도 전문경영인(연예·문학)을 채용하여 운영에 혁신을 기하고 있고, 정동극장이 행정기관(문광부)에서 민간에 위탁된 이후 경영에 일대혁신을 가져왔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체육회관도 현재의 직영체제에서 탈피하여 Y.M.C.A. 등 기획사를 참여시켜 위탁경영자를 선정,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각종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있는 반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오히려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주민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건의함.</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회관의 직원이 90% 이상이 일용직, 상용직, 고용직, 기능적인 바 이들의 문화회관 근무 전문성 결여와 고용직의 경우 5명이 방법원이고 기능직 3명도 검침, 사역, 시송직 등이며 국졸 5명, 중졸 2명, 50대 이상 7명, 60세 이상 4명 등 고령인데다 이들이 퇴직하면 인원충원이 안되는 실정인 바 정원내에서 신규채용을 전문성이 있는(고학력, 문화예술전공 등) 사람을 공개채용하여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민원봉사과	<p>○ 산만한 민원실 콘크리트 기둥을 목재로 산뜻하게 교체하고,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해당 민원창구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천장 부착형 안내판 설치로 민원인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민원실 환경조도(조명밝기)를 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10시 기준) 평균조도 : 300 ~ 350 Lux</li> <li>- 오후(15시 기준) 평균조도 : 300 ~ 400 Lux</li> </ul> <p>조도기준에 의한 민원실 적정조도(500Lux)에 미치지 못하여 구청의 열굴인 민원실의 첫인상이 다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므로 '99년도 종합민원실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실 조명밝기를 조도기준표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민원인에게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대민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p>○ 호적신고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민원이 집중되는 때가(겨울철) 있어 기다리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바 (정상처리 : 소요시간 7분, 집중시간대 : 소요시간 20분) 향후 민원인에게 접수번호표를 발급하여 창구담당직원이 우선처리하고 대기자는 순서대로 동 편제담당에게 안내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여 오래 기다리는 민원이 없도록 민원최우선 주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p> <p>○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 전체직원의 분위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창구직원 뿐만 아니라 과 전체직원에게 대하여 민원근무복을 제작 지급하여야 친절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됨.</p>
민 방 위 재난관리과	<p>○ 민방위 장비를 비치함에 있어 날로 증대하는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민방위 장비를 보면 오래된 장비 그대로 인 바 재난의 사고로부터 신속한 대처와 구조장비, 안전진단 장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단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난방지에 대한 진단장비는 현실에 맞는 현대화된 장비로 비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됨.</p>
재 무 과	<p>○ 국공유지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악덕 점유자와 선의의 점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p>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사 등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관행에 의거 서류만으로 입찰하여 재하청을 주는 폐단을 방지하여야 하며, 부도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하여도 철저히 규명해서 입찰에 따른 실명제 전환이 요구됨.</li> </ul>
세무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과세자료를 세무서에서 통보받아 과세기준을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기준일과 시간적 차이로 인한 폐업, 이전 등 사실조사의 어려움 및 폐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과세기준을 이전 폐업자와 계속 사업자간 과세의 형평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과세요건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 단일화 건의 요망.</li> <li>○ 각종 사업으로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대부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을 하였음에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폐업신고를 해야만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민원인은 거의 없는 실정하므로 앞으로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면허증 여백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음.</li> <li>○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주민전산망을 설치 운영중이나 세금체납자에 대한 주소조회 시 1차 전출지만 가능하고 2차부터는 전산으로 주소추적이 불가능하여 수기로 함으로써 많은 행정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전출자의 경우 구두 문의 후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나 제3주소지로 전출하였을 경우 반송되어 이에 따른 반송료가 연간 약 3,255천원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바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전산망으로 전국을 주소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li> </ul>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지 적 과	<p>○ 지적과는 구청 1층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곳으로 구민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내방하는 구청의 얼굴임에도 맞은편 민원봉사과와는 환경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열악한 형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대기실 협소(민원인 10명만 있어도 혼잡)</li> <li>- 민원대기용 쇼파와 의자가 낡아서 불쾌감 초래</li> <li>- 창구번호와 취급민원사무표시판이 미설치되어 민원불편초래</li> <li>- 민원인용 TV도 받침대가 없어 시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집기교체 등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함.</li> </ul> <p>○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구민의 재산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공부이며 국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서고 내 토지대장 등의 관리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서 제작된지 10여 년이 지난 나무책장은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너무 오래되어 지저분한 느낌마저 들고 지적도 관리에 필수적인 냉난방시설(황온항습기)도 없어 국가공적장부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적과 내 건축물서고에 설치된 모빌렛(철제조립식 서가)을 신규구입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p> <p>○ 지적과의 지적서고 외벽창문에 도난방지용 창살 등이 없어 외부 불순분자의 침입 및 방화 등의 우려가 있는 바 창문을 안전유리로 교체하고 방범창살을 설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p>
공 통 (납세고지서 발부 전부서)	<p>○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1만건 이상 발부되는 부서는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예 : 도로굴착복구 기금)</p> <p>○ 각종 세금고지서인 OCR 용지 구입단가가 부서별 각각 차이가 있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세무1과 24원 30전, 세무2과 14원 30전, 서울시 13원78전)</p>
공 통 (전부서)	<p>○ 금번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피감사자의 자세, 태도 등은 양호하였으나 모든 업무 추진사항이 구태의연한 감이 없지 않았음.</p> <p>앞으로 모든 업무의 계획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계획수립되어야 하며 모든 물품구입도 자기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구매를 하여야 할 것이며</p> <p>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선행답습의 형태는 버리고 자치시대에 맞는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p>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북아현1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 보급율이 51%에 불과하여 우리구 전체 보급율에 못미치는 상황인바 도시가스 관련업무 취급이 구청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도시가스업무를 취급하면 가스보급율이 많이 향상될 것임.</li> <li>○ 직능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개발 정책에 적극활용하여야 할 것임.</li> </ul>
북아현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업이 너무 단조로운 실정인 바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li> </ul>
북아현3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가족결연, 생보자, 독거노인 등 전반적인 추진실태는 양호하나 수혜대상 가구가 62세대에서 31세대 밖에 안되는 실정인 바 결연사업을 적극추진하여 후원자를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임.</li> </ul>
북 아 현 1·2·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주5일 근무하면서도 월 635,000원이며 정규직 공무원(9급2호봉 기준)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월 588,740원으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에 대한 책임과 성실도의 결여는 물론 한계성이 있는 동단위 사업에 과다한 인원배정으로 작업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구단위 사업개발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부담이 짙은 저리융자로 대출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근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ul>
공 통 (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체제가 동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보수물량이 분산되어 보수업체의 낮은 이윤으로 적기에 보수가 안되고 각 동별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시 연간 보수단가를 100%적용계약체결하므로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는 바 앞으로 동장이 시행하고 있는 보안등의 수리 및 관리를 구청장(토목과장)이 관내를 2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일괄도급(연간단가계약) 시행함으로써 보수물량이 집중되어 경비가 감소되고 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서대문구 보안등 관리규칙에서 현행 동장이 '보안등 수리 및 보수'를 '보안등 점등상태 순찰'로, 현행 구청장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신설, 개량 및 수리보수'로 관련규칙 개선 요망.</li> </ul>

### 3. 시민건설위원회

가. 감사기간 : 1998. 11. 26 ~ 12. 2 (7일간)

나. 감사대상 및 사무범위

1) 감사대상 : 3국 13과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 도시관리국 :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 건설교통국 :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 사무범위 : 1998년도 중 처리한 구 행정사무전반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이진수 의원, 간사 최태중 의원

1) 국별 감사반

구분 반별	감사 위원	대 상 부 서		사무 보조	비고
		국 별	실·과별		
제1반	반장 : 김영일 의원 위원 : 허준구 의원 김종철 의원	생활복지국 (4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전문위원 : 한중현 의사담당주사 : 윤국주 직 원 : 권오상 김길록 이영순 성기주	
제2반	반장 : 정일출 의원 위원 : 이문복 의원 최광진 의원	도시관리국 (4과)	주 택 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 축 과		
제3반	반장 : 전성장 의원 위원 : 최태중 의원 김화형 의원	건설교통국	토 목 과 하 수 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라. 감사결과

1) 총괄

구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42	3	34	5	
생활복지국	11	1	9	1	
도시관리국	16	2	12	2	
건설교통국	14		12	2	
기타(공통)	1		1		

2)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명	감사 사항	우수 및 장려 사항
사회복지과	장애인 산업 시찰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담당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애는, 소외된 그들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발전된 사회상과 장애인 작업장 및 장애인요양원 등을 시찰케 함으로 자신감을 심어주었음.</li> <li>이에 위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함.</li> </ul>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주사 도부들, 지방행정주사보 이병화, 기능직 10등급 김승배는 '98. 5. 13일부터 '98. 5. 28일까지 15일간 걸쳐 주택건설촉진법 제 39조 7호에 의거 공동주택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조치하였고 '98. 11. 10일에는 시정결과를 취합하여 재점검함으로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주민을 위해 현장을 뛰는 행정과 계도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올바른 공직자의 표본이 되었음.</li> <li>이에 위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함.</li> </ul>

부서명	감사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도시정비과	무허가 광고물 정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학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무허가 간판들을 양성화시켜 무허가 광고물 정비는 물론 세원확보와 민원해소에 공헌하였음. 이에 위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함.</li> </ul>

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사회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한 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 보육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억제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임.</li> </ul>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좁은 시장 입구변에 인접하여 위치가 부적합하고 대지가 삼각형임에 따라 건물도 삼각형으로 약 2,100명의 장애인이 활용하기 부적합한 상태이며, 주차장 사전 미확보로 인하여 대지 추가매입비가 평당 916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차량 1대 주차를 위해 4,237만원이 소요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출된 총 건축금액으로 타부지 350평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됨. 건물전체를 재점검하고, 향후 공공건물의 신축시에는 사전에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li> </ul>
	구립유아원 지원금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지원금과 보육비의 집행에 따른 제증빙서류가 투명성 없이 적당히 처리된 바,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영·유아보육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사회복지과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 장애인은 2,076명인데, 비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일일 수용능력은 65명에 불과하며, 총 1,476,08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휠체어사용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핸드레일도 없으며, 또한 목욕탕 내에는 화장실도 없고, 환풍장치도 없으며,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 등 전시행정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한바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여야 할 것임.</li> </ul>
	인원감축에 따라 복지 담당 직원의 타업무 겸임에 의한 고유 업무의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제개편에 따라 통합 종전 인원은 33명에서 통합후 29명으로 감축되어 실직자, 노숙자 지원 등의 업무증가로 고유 복지업무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동 복지전문요원도 14%에 불과하며 통 담당 및 타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발굴 등 복지고유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을 확대하고 공익요원 중 사회복지분야의 전공자를 구 및 동에 배치하여 향후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데에 대비한 종합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임.</li> </ul>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양호하나 무의탁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바,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며, 예산을 조기에 적재적소에 집행하고 이웃돕기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지역경제과	해외 상설전시 판매장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6. 24부터 '99. 6. 25까지 미국 시카고에 서대문구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면서 3년간에 임대료 103,865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출실적은 372,200천원으로 투자에 비해 실적이 너무도 저조한 바, 판매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향후 재계약을 재고해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청소행정과	정화조 청소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98. 1. 13자로 개정되어 종전의 부가기준에 '정화조 용량'에서 '청소량'으로 변경되었는데 총정로2가 76의 9개소의 경우 예고금액과 영수금액이 66,980원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이 불충분하고 본 업무가 환경과와 청소과로 번복 이관됨에 따라 업무숙지가 미속하며,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홍보와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를 자주 이관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li> </ul>
	가로청소차 작업실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작업, 차량운행이 무계획적이고 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미흡하여 작업일지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소계획과 차량운행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실시에 충실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주택과	'98년도 재발생 무허가건물 감사 수검현황 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되었다고 복명된 무허가 건물 59건을 조사한 결과, 철거완료가 51건, 철거예정인 5건, 부수시설이 3건으로 이는 증축 및 대수선 신고에 의한 구제 방안도 불가하나, 이행강제금 부가처리시 대부분 영세주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며 주거용이 아닌 위 3건은 부수시설 등으로 재분류하여 구제해야 된다고 보는 바,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해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주 택 과	공동주택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확인한 바, 무자격자 관리 소장이 채용되었으며, 내부감사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과 안전관리 근거서류의 비치 등이 미흡하고, 공인회계사의 권고사항을 처리치 않고 방치하였으며, 동대표 선출시 입주자 동의과정이 소홀하며, 관리재산 계좌가 불분명하며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운영에 무관심과 관리직원 재정보증제도의 취약성 및 자체 감사기능이 미흡하여 관리비처리 등 회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권개입과 분쟁에 따른 조정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홍보개발이 필요함.</li> </ul>
	민영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24개 지역 57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 문화촌아파트의 진입로는 도로폭 12m 확보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받고 있으며, 사업승인 후 도로, 환경소음, 공해, 분진의 피해보상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구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바, 사업승인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li> </ul>
주택개량과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역 내의 신설 공공시설(도로개설) 내의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 공원용지)는 지방재정법 87조 및 동법시행령 78조 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26조 2항 6호 및 도시재개발법 제5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여서는 아니 될 토지를 서대문구청에서는(서울시 대행)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공용지를 조합에 매각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의를 받고 있는 바,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18m 주 진입로 구역내의 공공용지 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한 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함.</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주택개발과	주택건설사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시 구의회와 협의체를 이루어 민원을 해소하고, 착공 및 승인시 구의회에 통보할 것이며, 안전관리와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 차단함으로써 구행정의 신뢰를 쌓고 조건부 사업 승인시 미이행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임.</li> </ul>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관공비 지출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수날인이 없는 증빙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li> </ul>
	현저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뒤편 도로폐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은 우정건설회사의 특혜를 위해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진정 주민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여 친절1위에 부합한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임.</li> </ul>
도시정비과	가로가관점 관리실태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행정사무감사시 가관점 총 71개소 중에 19개소의 음식조리 판매행위를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li> </ul>
	노상단속실태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를 점유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 규정에 의하여 '96~'98년도까지 총 6백 86만원을 부과하였음.</li> <li>적치물을 압수하기 이전에 계도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것이며.</li> <li>단속과정에서 중산층의 적치물은 사진증거만 확보하고 규정에도 없는 서민층의 물건만 압수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단속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축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설주차장 관리가 건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이 교통지도과로 이관하였는 바, 우리구도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관리카드의 관리 및 정리상태가 불량한 바, 재정비하여 동 관리카드현황과 일치시키고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 정비해야 할 것임.</li> </ul>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55건 중 위반정도가 심한 14건은 구제가 불가능하나, 건축주의 시정의지가 있는 28건과 시정이 가능한 13건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구제해야 할 것임.</li> </ul>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은3동 397-16의 지상 5층 건물은 무단용도변경을 하여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북아현동 221-3 지하1층 지상1층 건축물은 1층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점포로 사용중인 바,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임.</li> </ul>
토목과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대문 관내 보안등 설치개수는 총 8,772개이나, 동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결여로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하고, 고장수리업체도 동단위로 선정하여 그때그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을뿐더러 예산편성(총무과), 예산집행·감독(동장, 관급자재지급(토목과) 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삼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바, 관내를 2개권역으로 구분하여 토목과에서 일괄도급으로 시행하고 2개의 우량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즉시 보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해야할 것임.</li> </ul>
	소방도로 개설사업구간 내 보상완료된 공사철거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가좌 제1동 144-156~126-1의 구간 내에 보상완료된 공가가 20여 동이 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방치되어 비행청소년들의 우범화는 물론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예상되니,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여야 할 것임.</li> </ul>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하수과	각종 공사의 4/4분기 치중에 의한 부실공사우려	○ 각종 하수공사가 년초에 발주하였으나,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바, 조기에 완공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체육시설 관리실태	○ 안산공원 체육시설은 27개소에 590점이 있으나 이중 허리돌리기 23개는 노후 및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일부 운동기구는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배드민턴장 주변에는 대형천막을 둘러놓아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아직도 취사를 하는 산행인들이 있는 바, 파손된 운동기구는 수리복구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약수터 관리상태	○ 관내 33개소의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연간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시는 그 내용(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민의 약수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무허가 건물 정리지연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정 대집행계고만 3회 실시하고, '98 행정사무감사시까지 미정된 상태임. 건물주를 계도하여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임.
	가로녹지대 관리의 문제점	○ 10개소의 녹지대와 2개소 하천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홍제천변 녹지대 정자에는 소파 및 이불 등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순찰 강화 및 미관저해 물건은 즉시 제거해야 할 것임.
	도시환경림 조성분야	○ 봉원동 산2번지 일대에 벌채목이 방치되어 있고, 고사목 30여주가 노출되어 있는 바, 즉시 보식해야 할 것임.
교통행정과	공용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 공용주차장은 12개 지역에 436구획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세수증대 차원에서 운영하고 중앙여고 담장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현재 교통지도과와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하여	<p>○ 구청에서 허가한 10개의 마을버스회사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및 일반버스의 연계로 대중교통의 보조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나 모든 마을버스는 법규를 위반운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차량은 노후화되고 차고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있으며, 정류소를 무시하고 사람있는 곳이면 아무 곳이나 정차하여 손님을 태우는 등 불법운행을 하고 있음.</p> <p>불법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엄격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본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임.</p>
	마을버스 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대하여	<p>○ 마을버스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되어 업체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바, 한 부서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p>
교통지도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p>○ 과태료부과는 총 73,793건에 2,978,230천원으로 이중 16,282건에 658,093천원을 징수(22.1%)하여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차량, 특히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임.</p>
지역경제과 하 수 과 교통지도과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32대분 노상주차에 대하여	<p>○ 셔틀버스가 백화점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스티카를 발부하고 별점제도를 도입·적용할 것이며,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도로 점용허가제를 마련하고, 창천동 31-75와 창천동 30-1의 건물사이 약 95평을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 연간 1억 4천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p>

4) 건의사항

부서명	감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회복지과	재활용비누 제조기 보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제3동사무소에는 '96년도에 재활용 비누제조기 1대를 약 2,530천에 구입·설치하여 폐식용유를 수거, 비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는 바, 비누제조기를 전 동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함.</li> </ul>
주택과	전세자금 용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 이후 용자금 연체내역은 65명에 2억 4천만원으로 용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li> </ul>
	홍제2동 시민아파트 관리부재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제2동 시민아파트 내 부속건물 1동이 우리구에 기부채납되어 있으나, 관리부서 없이 무단방치하여 한정순외 3명의 주민이 무단입주하여 노후불량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주시키고, '96,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노인정이나 독서실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조속히 시행을 촉구함.</li> </ul>
공원녹지과	가로수 과실수의 유익한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에서는 4년전부터 은행나무 열매를 일괄 채취·판매하여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구도 관내 가로수는 총 7,248주이며, 은행나무는 3,680주로 이중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약 1,000주가 됨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유익하게 활용토록 건의함.</li> </ul>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관대 청결유지 및 폐자전거 수거대책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인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으며, 폐자전거도 방치되어 있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li> </ul>

### Ⅲ. 민원처리

○ 청 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권리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어 된다.

○ 진 정

진정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진정서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할 권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 1. 현 황

총 계	청 원				진 정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19	·	·	·	·	19	19	·	·

#### 2. 청원처리

- 제3대 전반기 1년간은 청원처리 사항이 없었음.

3. 진정처리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 명	주 소	
1	'98.8.13	하수도 준설사업 도급요망	윤경자	마포구 합정동 371 - 26	실험결과 기준이내인 경우 적법 하게 허가받은 업체에게 재활용 할 예정임을 통보
2	'98.9.25	대현제1재개발 관련 건의안 결의에 대한 반대	고은석	서대문구 대현동 54 - 24	조합원의 재산권보존 및 행사를 위하여 대현제1재개발구역아파 트 준공승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수정건의안을 채택 하였음 을 통지
3	'98.10.28	아파트재건축 피해합의금 분배의 불공정 에 대한 조사 의혹 해소 요망	안복순 외20인	서대문구 북아현3동 1 - 1115	주민자치회 정·부회장과 회원인 주민간의 금전에 관한 사항으로 서 민사적인처리요인으로 구의 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임 을 통지
4	'98.11.10	북부고속도로중 흥제초등학교 ~벽산아파트간 동형식방음벽 설치요망외 5건	강신정	서대문구 흥은동 441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에 이송·이첩사항및 처리결과 향후 통지</li> <li>•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처리 회신 : 버스업체지도감독으로 정상운영케 하였음</li> <li>• 구 공원녹지과 회신 : 예산미 반영으로 공원조성 어려움</li> <li>• 통장훈포장.사회복지관건립, 공원조성에 적극노력 하겠음</li> </ul>
5	'98.11. 6	서대문구 흥제동 산1-100일대 구유지매입건 사실조사 요청	김종채	서대문구 흥제동 272 - 7	진정과 관련하여 구행정업무추진 에 문제점발견 못하였음을 통지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 명	주 소	
6	'98.11.25	건설교통부의 홍은2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특별지침중 일부 내용 수정요청	오원술 외 1인	서대문구 홍은2동 11 - 798외1	용적율은 동사무소에서 변경 할 수 있으며 진입도로폭 15m는 10m로 변경 불가
7	'98.12.21	재개발지구지정 기초용역예산배 정의 부당성에 관한건	손상갑	서대문구 홍은2동 13 - 59	홍은8·9·11구역의 사업계획 입안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 안대로 편성사실 통보
8	'98.12.28	남가좌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진정인 주택균열 및 지하층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요망	최세봉 외 1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2 - 8	집수정제거 및 비상계단철거· 방수공사토록 시공사에 지시
9	'99.1.14	태진주택 건축 시공사의 부당 이익금반환 요청	김재홍	서대문구 홍제동 성원 ☎103-1102	서부지청의 수사로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을 통보
10	'99.2. 1	무악청구 아파트내 상가 분양 등기지연 과태료철회 및 재산압류 해제 요청	최선옥	종로구 관훈동 197 - 18	부 동 산 등 기 특 별 조 치 법 에 의한 구제절차인 아의신청을 하지않았으므로 조속히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민원인에 게 통보
11	'99.3.9	사무국직원 건축물옆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등으로 질의답변 요망	구자선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해당직원에게 당사자와 화해 토록 요구하고 주의촉구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 명	주 소	
12	'99.3.13	홍제동 청구 연합주택 토지 개발부담금 조정 건의 및 구청위법행위 조치 요구	이한우	서초구 양재동 398 - 7	개발부담금은 적법하게 부과 되었으며, 개인재산압류는 조 속히 해제하겠음을 통보
13	'99.3.16	서대문구청장의 월권 및 직무 유기 감사 진정	고은석	서대문구 대현동 54 - 24	입주자들의 불안해소와 재산 권보호를 위하여 구의회 준공 처리 촉구건의문과 전조합원 의 염원에 부응하여 부분준공 을 승인함.
14	'99.3.18	'98년도 상임 위원회 활동 및 안전처리 현황 요청	송 곡	E-mail: Song @hanmail.net	현황서 작성하여 구청PC통신 으로 송부
15	'99.4. 1	기제출한 진정 처리일자,이송 기관 및 주관 위원회등 현황 요구	고은석	서대문구 대현동 54 - 24	'99.3.19일자로 서대문구청장 에 처리 이첩하였고 이에 구 청장이 '99.3.26일자로 민원처 리회신하였음을 통보
16	'99.4.12	홍은극동 아파트 주민입 로 차량통행 불편해소 요구	서경업	서대문구 홍은2동 454	미끄럼방지 재포장, 반사경정 비, 불법주차단속, 기타사항등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을 통보
17	'99.4.15	진정인에 대한 김화형 의원의 진정 등은 직위 이용한 압력으로 이에 대한 의장 의 고견 요청	이종엽	서대문구 북아현동 237 - 68	사안간의 민사적인 내용으로서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함과 동 시에 김화형 의원에게 의장이 원만하게 해결토록 권유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 명	주 소	
18	'99.4.26	불법무허가 건축물 철거 요구	이종욱 외 5인	대구 광역시 수성구매호동 398-7	'99.5.10한 자진철거토록 계고 조치 하였음을 통보
19	'99.5.3	홍은1동 453번지 공원 부지의 공원 조성 예산배정 요청	강신정	서대문구 홍은동 48 - 159	공원정비계획수립등 '99년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하여 주 민의 공원시설물 이용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음을 통보

## IV. 의원세미나

### 1. 의원세미나

기 간	장 소	목 적	강 사	참석인원
'98.10.27 ~ '98.10.30 (3박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초시 의회</li> <li>경주·포항 기관산업체</li> </ul>	제3대의회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의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세미나 및 타시도 의회운영실태 등의 비교시찰을 통하여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 도모	경주대학교 신희영 교수	(총 2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 19명</li> <li>직원 9명</li> </ul>
'98.11.18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li> </ul>	제65회 정기회 대비 구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에 따른 관련규정등 전문지식함양을 위한 예산관련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	명지전문 대학교 박옥순 교수	(총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 21명</li> </ul>
'99.3.26 (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li> </ul>	지방자치운영 및 지방경제에 관한 전문강사를 초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	청와대 경제비서관 오종남 교수	(총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 20명</li> </ul>
'99.4.27 ~ '99.4.30 (3박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도군 의회</li> <li>순천대학교</li> </ul>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원세미나를 통한 전문지식습득과 타시도 의회운영실태파악 및 자매결연 목적을 위한 비교방문을 통하여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한 의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	(총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 20명</li> <li>직원 6명</li> </ul>



目 次

附 錄

目 次



서대문구의회 · 구청 전화번호

구 의 회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의 장	364-5900	사 무 국	의 정	364-5902
부 의 장	364-5901		의 사	364-5903
사 무 국 장	364-5905		의 안	364-5904
전 문 위 원	364-5903~4		F A X	364-5049

서대문구청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구 청 장	324-5994		총 무	324-6343			
	336-5878			330-1310	310		
	330-1303	303		330-1311	311		
	330-1333	333		인 사	330-1312	312	
부 구 청 장	324-7742				330-1323	323	
	330-1304	304			330-1329	329	
	330-1334	334		자 치 행 정	330-1313	313	
감 사 담 당 관	감 사	330-1470			470	330-1314	314
		330-1471			471	330-1629	629
	조 사	330-1472		472	대 외 협 력	330-1630	630
		330-1473	473	사 회 진 흥		330-1320	320
		민 원 관 리	330-1566		566	330-1321	321
	민방위 재난관리		330-1324	324	(FAX)	330-1449	
		330-1325	325	기 획 예 산 과	기 획	330-1315	315
	민방위 교육 훈련	330-1326	326			330-1316	316
		330-1328	328		예 산	330-1317	317
	(FAX)	330-1565			법 제	330-1318	318
구청기동처리반	330-1414	414	전 산		330-1319	319	
민 원 신 고	326-1061		(FAX)		330-1442		
행 정 관 리 국 장	324-7455		전 산 실		330-1369	369	
	330-1305	305			330-1460	460	
	330-1335	335	자 료 실		330-1439	439	
					330-1459	459	

부록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문화체육관광	공보	330-1410	410	재무국장		330-1306	306
		330-1411	411			330-1336	336
	문화관광	330-1412	412	재무과	재산관리	330-1340	340
		330-1577	577			330-1341	341
	생활체육	330-1322	322	계약	330-1342	342	
		(FAX)	330-1430		330-1343	343	
	문화회관	391-9032	330-1551	551	지출	330-1344	344
			330-1560	560		330-1553	553
			330-1561	561	용지	330-1399	399
		(FAX)	391-9031	330-1400		400	
	체육회관	395-8231~4		(FAX)	330-1429		
	문화의집	3217-0359		세무1과	세무 1	330-1345	34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63-9750~1				330-1346	346
		330-1626	626		세무 2	330-1347	347
(FAX)	363-9752		330-1348	348			
민원봉사과	문서관리	330-1435	435	세무 3	330-1349	349	
		330-1436	436		330-1554	554	
		330-1437	437	조사평가	330-1557	557	
	민원처리	330-1421	421		(FAX)	330-1707	
		330-1422	422	세무2과	정리	330-1350	350
		330-1423	423			330-1351	351
	1회민원	322-8282			과징 1	330-1352	352
	호적	330-1424	424			330-1353	353
		330-1425	425	과징 2	330-1354	354	
	330-1426	426	과징 3		330-1575	575	
병사	330-1327	327		지적과	지정	330-1450	450
	(FAX)	330-1684	330-1451			451	
전화민원	332-3001		토지관리		330-1452	452	
		333-3001					
	330-1301	301					
	330-1302	302					
330-1114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지 적 과	지 적 관 리	330-1495	495	청 소 행 정 과	서 무	333-6000	
	지 가 조 사	330-1496	496			330-1375	375
	건 축 물 관 리	330-1497	497		작 업	330-1376	376
	(FAX)	330-1498			재 활 용	330-1377	377
생활복지국장		330-1307	307		장 비 관 리	330-1378	378
		330-1337	337		폐 기 물 관 리	330-1564	564
사 회 복 지 과	사 회	330-1355	355		(FAX)	330-1712	
		330-1356	356		청 소 차 고	373-2773	468
	복 지	330-1357	357		재 활 용 센 타	394-8272	
		330-1358	358		도 시 관 리 국 장		330-1308
	가 정 복 지	330-1490	490	330-1338			338
		부 녀 청 소 년	330-1492	492	주 택 과	주 택	330-1380
330-1493	493			330-1381		381	
(FAX)	330-1619		주 택 관 리	330-1382		382	
환 경 위 생 과	식 품 위 생	330-1360	360	주 택 정 비		330-1383	383
		330-1361	361	(FAX)		330-1634	
	공 중 위 생	330-1362	362	대 기 실	330-1463	463	
		330-1363	363	주 택 개 량 과	개 량 1	330-1384	384
	위 생 관 리	330-1364	364			330-1455	455
	환 경 관 리	330-1370	370		개 량 2	330-1456	456
		330-1371	371		주 거 환 경	330-1457	457
	생 활 공 해	330-1372	372		(FAX)	330-1624	
330-1373		373	추 진 반	330-1587	587		
(FAX)	330-1597		도 시 정 비 과	도 시 계 획	330-1385	385	
지 역 경 제 과	상 공	334-0700				330-1386	386
		330-1365		365	광 고 물 관 리	330-1387	387
	유 통 관 리	330-1366		366	보 상	330-1401	401
	연 료	330-1367		367		330-1402	402
	(FAX)	330-1368		368	가 로 정 비	330-1446	446
	취 업 정 보 은행	330-1419		419	가 로 정 비 대 기 실	330-1573	573
		330-1639		639	신 촌 초 소	320-3864	
	공 공 근 로 추 진 반	330-1606		606	광 고 물 대 기 실	330-1631	631
		330-1607		607	(FAX)	330-1636	
		330-1633	633				
(FAX)	330-1605						

부 록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실 ·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건축과	건축관리	330-1390	390	공원녹지과	공익요원대기실	330-1394	394
		330-1391	391		녹지인부대기실	330-1622	622
	건축 1	330-1392	392		공원인부대기실	330-1572	572
	건축 2	330-1393	393		수경재배장	330-1576	576
	영선	330-1448	448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330-1481	481
	건축민원실	330-1567	567			330-1482	482
		330-1568	568		교통시설	330-1483	483
(FAX)	330-1440		자동차정비		330-1627	627	
건설교통국장	330-1309	309	330-1628		628		
	330-1339	339	자동차등록		330-1444	444	
토목하수과	토목	330-1405	405	330-1484	484		
		330-1406	406	중기등록	330-1559	559	
	도로관리	330-1407	407	(FAX)	330-1445		
		330-1562	562	교통지도과	주차관리	330-1485	485
	도로조명	330-1563	563		330-1486	486	
	하수	330-1415	415		교통과징	330-1487	487
		330-1416	416		330-1617	617	
	지하수	330-1417	417		운수지도	330-1618	618
		330-1418	418		(FAX)	330-1638	
	(FAX)	330-1615		주차단속원실	330-1432	432	
		330-1547		330-1595	595		
	토목기동반대기실	394-5965		버스전용차선	330-1582	582	
		하수기동반대기실	330-1580	580	330-1589	589	
공원녹지과	공원		330-1395	395	<b>실</b>		
		330-1396	396	시책추진반	제2청사추진	330-1586	586
	녹지	330-1397	397		330-1587	587	
		조경	330-1433		433	여성구정평가추진	330-1600
	(FAX)		330-1750			330-1601	601
	독립공원	330-1398	398		새주소부여사업추진	330-1608	608
			(FAX)	330-1609	609		
				종합상황실 (당직실) (FAX)	333-4599		
					337-2000		
					330-1300	300	
					330-1330	330	
				(FAX)	336-0425		

실·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b>실</b>			서대문경찰서	362-2345	465		
친절민원안내	330-1458	458	서부경찰서	359-4100	466		
대회의실	330-1431	431	홍연파출소	334-0112	467		
지하상황실	330-1434	434	서부도로관리사업소	303-8461			
공직자윤리위원회	330-1438	438	은평수도사업소	730-3852			
전화기계실	330-1331	331	의료보험서대문·은평지사	326-0658	571		
	330-1332	332	서대문등기소	382-5651			
전기실	330-1374	374	서대문세무서	2287-4200			
기관실	330-1474	474	서대문세무서(별관)	2287-4615			
등사실	330-1475	475					
윤전기사대기실	330-1477	477	<b>보 건 소</b>				
	330-1478	478	<b>소 장</b>				
위생원실	330-1359	359		362-3534			
주차타워	330-1420	420		390-4421	421		
청사정문	330-1593	593	보건행정과	보건의기획	390-4422	422	
청사후문	330-1594	594			390-4410	410	
중대본부	330-1479	479		운영	390-4411	411	
증지판매	330-1409	409		방역	390-4412	412	
구내식당	330-1591	591		(FAX)	392-2137		
	330-1592	592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390-4424	424	
청소노조지부	324-7685	464			390-4425	425	
구내약국	330-1488	488		가족보건	390-4426	426	
구내상업은행	324-1318	428		건강관리	390-4427	427	
여행사	3142-2500		의약과	의무	390-4423	423	
체력단련장	330-1598	598				390-4440	440
				약무	390-4441	441	
				검진	390-4442	442	
<b>외 부 기 관</b>			결핵관리실	390-4428	428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330-1379	379		390-4429	429		
	324-5841		예방접종실	390-4430	430		
민주평화통일협의회	330-1590	590	검진실	390-4431	431		
	324-3467						

부록

보 건 소	일반전화	행정	동	일반전화	행정
영 · 유 아 실	390-4432	432	북아현제3동 (FAX 363-4916)	363-4913 ~5	511
	390-4433	433			512
모 성 실	390-4434	434	대 신 동 (FAX 363-7545)	363-7542 ~4	513 514
가 족 계 획 실	390-4435	435	창 천 동 (FAX 363-5850)	363-5851 ~3	515 516
내 과	390-4443	443	연희제1동 (FAX 322-1384)	322-1381 ~3	517
치 과	390-4444	444			518
물 리 치 료 실	390-4445	445	연희제2동 (FAX 322-3349)	322-3346 ~8	519 520
임 상 병 리 실	390-4446	446	연희제3동 (FAX 322-3124)	322-3121 ~3	521
	390-4447	447			522
방 사 선 실	390-4448	448	홍제제1동 (FAX 394-4544)	394-4541 ~3	523 524
약 국	390-4449	449	홍제제2동 (FAX 733-2794)	733-2791 ~3	525 526
민 원 안 내	390-4414	414	홍제제3동 (FAX 394-3274)	394-3271 ~3	527 528
당 직 실	390-4415	415	홍제제4동 (FAX 391-6573)	395-0201 ~3	529 530
기 사 대 기 실	390-4416	416	홍은제1동 (FAX 3216-4494)	3216-4491 ~3	531 532
기 관 실	390-4417	417	홍은제2동 (FAX 396-4214)	396-4211 ~3	533
전 화 기 계 실	390-4300	300			534
<b>동</b>	<b>일반전화</b>	<b>행정</b>	홍은제3동 (FAX 396-4814)	396-4811 ~3	535 536
충정로동 (FAX 363-2145)	363-2142 ~4	501 502	남가좌제1동 (FAX 375-7504)	375-7501 ~3	537 538
천연동 (FAX 363-2536)	363-2533 ~5	503 504	남가좌제2동 (FAX 375-6225)	375-6222 ~4	539 540
북아현제1동 (FAX 363-4254)	363-4251 ~3	507 508	북가좌제1동 (FAX 374-7244)	374-7241 ~3	541 542
북아현제2동 (FAX 363-4276)	363-4273 ~5	509 510	북가좌제2동 (FAX 375-4184)	375-4181 ~3	543 544

##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본 청 : 국번없이 120번
  - └ 자치구 : 해당국번 + 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원내용
1번+#→	수도민원
2번+#→	교통민원
3번+#→	의학정보제공
4번+#→	행정법규상담
5번+#→	주택상담
6번+#→	관광안내
7번+#→	도시계획상담
8번+#→	지방법률상담
9번+#→	지방세세무상담
10번+#→	건축상담
11번+#→	중소기업지원및구인구직안내
12번+#→	시정안내
13번+#→	공직자부조리신고
14번+#→	생활관련신고및고발
15번+#→	시설물훼손신고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

## 서울시 각 구청 전화번호

구 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각구의회
중 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435	731-0310	725-6982	723-6813 ~ 5
중 구	260-1303	260-1114	266-2000	260-1301	260-1310	250-4401	269-3103 ~ 7
용 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422	710-3422	790-4381 ~ 6
성 동	290-7333	290-7114	290-7300	290-7435	290-7422	290-7422	299-1544 ~ 7
광 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422	450-1422	450-1441 ~ 7
동 대 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420	920-4420	214-8040 ~ 5
중 랑	490-3303	490-3114	490-3300	433-3001	490-3422	490-3422	3423-2091 ~ 4
성 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301	941-2672	941-2672	927-8094 ~ 7
강 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422	901-6422	901-6441 ~ 7
도 봉	901-5333	903-3001	901-5300	901-5301	901-5422	901-5422	997-8813 ~ 8
노 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301	950-3422	950-3422	950-3441 ~ 7
은 평	389-2000	350-1399	389-2000	350-1301	350-1691	350-1691	350-1441 ~ 7
서 대 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2-3001	390-4411	390-4411	364-5900 ~ 4
마 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422	330-2422	325-1987 ~ 8
양 천	650-3333	650-3114	650-3300	645-3001	650-3422	650-3422	652-7234 ~ 5
강 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435	3664-6932	3664-6932	654-0920 ~ 2
구 로	860-2333	860-2114	856-2000	853-3001	860-2266	860-2266	852-0272 ~ 4
금 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422	890-2422	896-5765 ~ 7
영 등 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4-3001	630-0311	630-0311	670-3446 ~ 7
동 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422	820-1422	823-6492 ~ 4
관 약	888-0001	880-3114	874-2761	877-3001	874-2761	874-2761	880-0600 ~ 4
서 초	570-6333	570-6462	588-2000	570-6301	570-6572	570-6572	570-6670 ~ 80
강 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3451-2510	3451-2510	561-9947 ~ 9
송 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434	410-3422	410-3422	203-1811 ~ 4
강 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224-0710	224-0710	224-9001 ~ 2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 서울특별시 의회

## 서울특별시 의회

직책	전화번호	직책	전화번호
의장	723-6981~2	의사담당관	3702-1273
사무처장	3702-1236	의안담당관	3702-1347
의정담당관	3702-1242		

## 시의원 명단

선거구	성명	소속상임위원회	전화번호
제1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1,2,3동, 대신동, 창천동)	주세만	운영, 교통위원회	362-8860
제2선거구 (연희제1,2,3동, 홍제제1,2,4동)	이강욱	운영, 건설위원회	322-0678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2,3동)	김옥원	교통위원회	302-8820
제4선거구 (남가좌제1,2동, 북가좌제1,2동)	신경식	행정자치위원회	754-0058

유관기관 및 각종 안내전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마포구 공덕동 105-1)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 생활 침해 사범 신고	3273-3333	공안과장실	711-4382
지청장실	706-1691	공안과	711-4383
차장검사실	706-1692	사건과장실	706-8656
형사제1부장실	706-1693	사건과	706-8657
형사제2부장실	706-1694	집행과장실	706-6740
형사제3부장실	706-1695	집행과	711-4381
사무국장실	706-8291	법률구조공단	
사무과장실	706-8292	서부직할출장소	
수사과장실	711-4384	자동상담실	700-2080
1호수사관실	711-4385	법률상담실	713-6009
2호수사관실	711-4386	전담변호사실	707-3749

서대문경찰서

(미근동 16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장실	362-2345	형사과	393-1683
경무과	362-3304	교통과	313-9395
민원실	362-4400	경비과	362-2546
민원실	362-7000	정보과	362-4450
방범과	362-6443	보안과	362-0113
방범순찰대	312-2418	경우회	362-2368
수사과	362-2548	경목실	363-1313

## 서부 경찰서

(은평구 녹번동 177)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4100	정	보	과	387-0326
경	무	과	357-2527	보	안	과	384-0113
민	원	봉 사 실	358-0112	경	목	실	355-8956
경	비	과	385-9191	방	범	순 찰 대	386-5210
교	통	과	359-0663	청	소	년 지 도 육 성 회	359-4941
방	범	과	384-0672	청	소	년 상 답 실	359-7000
수	사	과	386-3766				
형	사	과	386-0330				

## 파 출 소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정로파출소	충정로, 미근, 합동	362-3557	홍 연 파 출 소	연희3동	334-0112
독립문파출소	영천, 옥천동, 냉천, 천연동, 현저동	363-5316	홍 은 1 파 출 소	홍은1동	3216-9947
북아현1 파출소	북아현1동	362-1615	홍 은 2 파 출 소	홍은2동	395-1775
북아현파출소	북아현2동		홍 서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03-9902
북아현파출소	북아현3동	362-3559	홍 은 3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91-5568
대 신 파 출 소	대신동일부, 신촌, 봉원동	393-0113	홍 제 파 출 소	홍제1동	396-5247
대 현 파 출 소	대신동일부	363-0469	안 산 파 출 소	홍제2, 4동	735-8254
신 촌 파 출 소	창천동	392-2113	문 화 촌 파 출 소	홍제3동	379-6737
연 희 파 출 소	연희1동	334-5169	남 가 좌 1 파 출 소	남가좌1동	373-4762
연 궁 파 출 소	연희2동	334-0113	남 가 좌 2 파 출 소	남가좌2동	373-4113
			북 가 좌 1 파 출 소	북가좌1동	372-5488
			북 가 좌 2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72-0520
			북 가 좌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02-1443

**부 록**

**서대문 세무서**

(본관 : 홍제동 251, 별관 : 은평구 응암동 84-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안 내 (당직실)	2287-4611~2	서 장	2287-4201~2
별 관 안 내 (당직실)	2287-4615	납 세 지 원 과	2287-4231~4
납 세 서 비 스 센 타		징 세 과	2287-4261~5
민 원	2287-4251~5	세 원 관 리 1 과	2287-4301~6
신 고 등 록	2287-4241~9	세 원 관 리 2 과	2287-4381~8
부 동 산 양 도 창 구	2287-4446	조 사 1 과	2287-4501~8
	2287-4681	(별관)	
세 무 상 담	2287-4221~3	조 사 2 과	2287-4551~8
납 세 자 보 호 상 담 관	2287-4211~4	(별관)	

**서대문 등기소**

(은평구 응암동 95-1)

안 내	민 원 접 수 (등·초본 발급안내)	F A X
382-5651	352-0999	355-0458

**은평수도사업소**

(홍제 4동산1-173)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소 장 실	730-3859	요 금 2 과	722-0655~7
총 무 과	730-3852~3	공 무 1 과	730-3854~6
민 원 상 황 실	730-3850	공 무 2 과	730-3857~8
상 황 계 (F A X)	722-3602	양 수 기 반	722-7136
요 금 1 과	720-9262~3		

서 부 교 육 청

(대현동 67-1)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교 육 장 실	362-1090	관 리 국 장	362-1201
학 무 국 장	362-1095	관 리 과 장	363-2751
초 등 교 육 과 장	362-0544	서 무 계	363-2755
초 등 교 육 계	364-6613	문 서 수 발 실	313-4507
유 아 교 육 계	392-6586	관 리 계	362-1420
학 사 계	363-2752	기 획 감 사 계	362-1432
중 등 교 육 과 장	364-6616	전 산 실	313-4908
중 등 교 육 계	362-0804	재 무 과 장	362-7289
과 학 기 술 계	312-2701	경 리 계	363-2753
사 회 교 육 체 육 과 장	362-9490	관 재 계	363-2754
사 회 교 육 행 정 계	362-1729	시 설 과 장	363-0170
사 회 교 육 지 도 계	364-8783	시 설 1 계	364-8784
체 육 청 소 년 계	362-7288	시 설 2 계	364-8785
학 교 보 건 계	364-8782	F A X	364-6057~9
		교 육 상 담 실	362-5796
		당 직 실	363-2751

서 부 소 방 서

(은평구 녹번동 48-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0119	북 가 좌 파 출 소	372-0119
소 방 과	355-1119	(북 가 좌 333 - 9)	
방 호 과	357-8509	연 회 파 출 소	336-0119
구 조 · 구 급 과	382-0119	(연 회 81 - 10)	
F A X	382-1149	홍 은 파 출 소	379-0119
		(홍은2동 11-854)	

종로소방서

(종로구 수송동 146-2)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733-0119	구 조 · 구 급 과			725-3119
소	방	과	723-2124	서 대 문 파 출 소			312-2119
방	호	과	722-0120	(미 근 1 6 5)			

우 체 국

우 체 국 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	대	문	우	체 국	창천동 98-3	324-0014
총	정	로	우	체 국	충정로 2가 8-2	362-0014
신	촌		우	체 국	대현동 90-101	362-0205
홍	제	동	우	체 국	홍제1동 158-45	379-3790
모	래	내	우	체 국	북가좌2동 424-29	373-2005
연	희	동	우	체 국	연희2동 90-15	333-6004
연	대		우	체 국	신촌동 134	392-0205
이	대		우	체 국	대현동 11-1	312-0500
명	지	대	우	체 국	남가좌동 50-3	373-0182
경	찰	청	우	체 국	미근동 209	393-2001
홍	제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제3동 278-10	391-8910
홍	은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은3동 275-28	395-2749
홍	남	우 편 취 급 소			남가좌2동 338-39	307-2005
독	립	문 우 편 취 급 소			현저동 52-3	312-0225
홍	은	미 성 우 편 물 취 급 소			홍은3동 189-33	3216-6161
미	근	동 우 편 물 취 급 소			미근동 94-1	365-0315

## 전 화 국

전 화 국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광 화 문 전 화 국	홍제동 전지역	국번 + 0000
불 광 전 화 국	홍은, 남가좌, 북가좌지역	국번 + 0000
신 촌 전 화 국	기타지역	국번 + 0000

## 의료보험조합

(연희동 134-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대 표 이 사	338-1307	징 수 과	3141-2752~4
관 리 과	3141-4386~9	급 여 과	3141-4386~9
총 무 과	326-0658		

## 조 등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미 동 초 등 학 교	미근동 36	1896	364-6524
경 기 초 등 학 교	충정로2가 70	1965	336-2908
금 화 초 등 학 교	천연동 13	1924	364-9275
대 신 초 등 학 교	대현동 67-1	1965	363-1564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사 범	대신동 20	1955	312-5227
대 학 부 속 초 등 학 교			
창 서 초 등 학 교	창천동 53-1	1961	332-9531
북 성 초 등 학 교	북아현 2동 215	1941	362-0669
추 계 초 등 학 교	북아현 3동 190-1	1965	312-7701
연 회 초 등 학 교	연희3동 88-1	1968	336-4597
고 은 초 등 학 교	홍제1동 320	1971	395-6034
안 산 초 등 학 교	홍제2동 산 44	1962	735-3069
홍 은 초 등 학 교	홍제3동 286-5	1974	391-2196
인 왕 초 등 학 교	홍제3동 245-1	1962	391-5972
홍 제 초 등 학 교	홍은1동 산 48	1937	3216-3354
홍 연 초 등 학 교	홍은3동 305	1975	379-6528
연 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224-228	1973	309-0587
명 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50-3	1967	309-1839
북 가 좌 초 등 학 교	북가좌1동 376-17	1969	372-4042

## 중·고등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인창중·고등학교	충정로 2가 69	1922	363-3393
동명여자중학교	천연동 31-1	1921	363-5042
금란여자중·고등학교	대신동 113	1960	392-4368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신동 47	1955	392-2062
대학부속중·고등학교			
한성중·고등학교	북아현 1동 170-1	1928	363-4943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40	393-5128
서연중학교	연희1동 산 267-1	1985	332-7376
서울외국인학교	연희3동 55-1	1958	334-3660
신연중학교	연희3동 산 2-6	1987	379-9233
연북중학교	연희3동 산 141	1985	332-7377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연희3동 89-1	1968	324-0664
홍은중학교	연희3동 186-3	1984	3216-0512
정원여자중학교	홍은3동 산 11-97	1969	379-4310
명지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48	305-5953
명지여자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69	303-9230
연희여자중학교	남가좌2동 368-1	1975	372-2992
한성과학고등학교	현저동 산5	1992	365-2851

## 대 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경기대학교	충정로 2가 71	1957	390-5114
감리교신학대학	냉천동 31	1895	361-9114
연세대학교	신촌동 134	1885	361-2114
이화여자대학교	대현동 11-1	1886	360-2114
서울간호전문대학	홍제3동 287-89	1954	395-8012
명지대학	남가좌2동 50-3	1970	300-1700
명지실업전문대학	남가좌2동 50-3	1974	300-1000
추계예술학교	북아현3동 190-1	1974	362-4513

## 지 하 철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34-7001	홍 제 역	391-0517
이 대 역	313-9713	무 약 재 역	736-0518
아 현 역	313-9712	독 립 문 역	733-7457
충 정 로 역 (2호선)	313-9711	서 대 문 역	392-5927
충 정 로 역 (5호선)	362-2866	서 울 시 지 하 철 공 사	520-5114

## 기 차 역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63-7788	가 좌 역	373-1280

## 관내소재 기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경 찰 청	363-0112	서 대 문 형 무 소 역 사 관	363-9750-1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3708-2525	종 합 사 회 복 지 관	375-5040
프 랑 스 대 사 관	312-3272	금 화 터 널 관 리 사 무 소	363-6866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90-7302	동 아 일 보	334-3689

## 서대문도서관

(연희동 산2-113)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관 장 실	396-3156	열 람 과	396-3159
서 무 과	396-3157	관 외 대 출 실	379-8619
사 서 과	396-3158	F A X	391-6172